

# 교육강화 방안

2012.11

금융정보분석원

## 차

차 례 .....	3
그림 차례 .....	4
<b>1. 개요 .....</b>	<b>5</b>
1.1 교육의 필요성 .....	5
1.2 금융정보분석원의 역할 및 성과 .....	6
1.3 선진국 AML 교육운영 현황 .....	8
1.4 우리나라 금융회사 AML 교육추진 현황 .....	15
1.5 시사점 .....	19
<b>2. 자금세탁방지제도 교육강화 전략 .....</b>	<b>21</b>
2.1 교육강화 전략체계 .....	21
2.2 기본방향 .....	22
2.3 추진전략 .....	22
2.4 추진과제 .....	23
2.5 추진 로드맵 .....	24
<b>3. 추진과제 실행방안 .....</b>	<b>26</b>
3.1 1단계 추진과제 .....	26
3.1.1 ( 1) 교육자원 관리체계 수립 .....	27
3.1.2 (추진과제 2) 교육컨텐츠 Pool 확보 .....	36
3.1.3 (추진과제 3) 전문강사 Pool 확보 .....	41
3.1.4 과제 실행방안 .....	44
3.2 2단계 추진과제 .....	49
3.2.1 (추진과제 4) 교육인증제도 도입 .....	49
■ 해외 사례 .....	51
3.2.2 과제 실행방안 .....	58
3.2.3 (참고) 교육기관 인증제도 도입 .....	68
3.3 3단계 추진과제 .....	72
3.3.1 (추진과제 5) 자금세탁방지 전문협회 설립 .....	72
■ 민간협회 해외사례 .....	73
3.3.2 과제 실행방안 .....	81
<b>참고자료 .....</b>	<b>86</b>
[별첨 1] 소규모 금융회사를 위한 교육컨텐츠 개발방안 .....	87
[별첨 2] 소규모 금융회사 교육컨텐츠 개발을 위한 설문조사 .....	96

## 차 례

< 표 1-1> 연도별 교육추진내용 및 성과	7
< 표 1-2> AUSTRAC 외부 홈페이지 제공 교육프로그램	11
< 표 1-3> 미국 금융회사 관련 협회의 교육방식	13
< 표 2-1> 세부 추진과제 리스트	23
< 표 2-2> 중장기 전략추진 로드맵 개요(案)	24
< 표 3-1> 교육컨텐츠 세분화 기준	38
< 표 3-2> 교육유형 및 대상 구분	39
< 표 3-3>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41
< 표 3-4> 해외 인증제도 요약	50
< 표 3-5> CAMS 구성내용	52
< 표 3-6> FIBA 주최의 자격시험 구성내용	52
< 표 3-7> ICA Certificate 구성내용	53
< 표 3-8> AML 인증관리체계	57
< 표 3-9>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의 비교	59
< 표 3-10> 자격관리 주체에 따른 장단점	59
< 표 3-11> 자격제도 비교	61
< 표 3-12> 교육기관 인증제도 장단점	69
< 표 3-13> 국가 교육인증기관 예	69
< 표 3-14> 실행주체별 역할	70
< 표 3-15> ICA 회원자격 구분	75
< 표 3-16> 법인형태 구분	82

## 그림 차례

< 그림 1-1> 미국의 민간자율형 교육운영체계	9
< 그림 1-2> 은행권 자금세탁방지 교육체계	16
< 그림 1-3> 영국의 JMLSG 홈페이지	20
< 그림 2-1>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교육 강화를 위한 전략체계도	21
< 그림 3-1> 전략체계와 추진과제의 관계도	26
< 그림 3-2> CUNA Portal의 Trainer's Portal & Trainers Corner	28
< 그림 3-3> 전문강사 관리 및 활용체계	30
< 그림 3-4> BBA 홈페이지	32
< 그림 3-5> 영국의 KYC360°	33
< 그림 3-6> 교육자원 공유체계	34
< 그림 3-7> 교육컨텐츠 세분화 수준	37
< 그림 3-8> 교육교재 활용의 선순환	39
< 그림 3-9> 교육자원 Infra 확보절차	44
< 그림 3-10> 1단계 추진과제 실행 로드맵(案)	46
< 그림 3-11> AML 교육 인증제도 운영흐름도(案)	56
< 그림 3-12> AML 자격/인증제도 도입방안	60
< 그림 3-13> 민간자격 등록절차	65
< 그림 3-14> 민간자격 국가공인 절차	66
< 그림 3-15> 교육인증제도 추진 로드맵(案)	66
< 그림 3-16> AML 교육기관 인증제도 프로세스(案)	71
< 그림 3-17> ACAMS 홈페이지	73
< 그림 3-18> ICA 홈페이지	74
< 그림 3-19> IMLPO 홈페이지	76
< 그림 3-20> 자금세탁방지 협의회를 통한 협회설립 개념도	78
< 그림 3-21>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요건	83
< 그림 3-22> 자금세탁방지협회 설립 추진 로드맵(案)	84

# 1.

## 1.1 교육의 필요성

고도화 및 능동화되고 있는 불법자금거래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종사자들이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함과 동시에 제도에 대한 인식도를 지속적으로 제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자금세탁에 대한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교육홍보활동에 대한 뒷받침이 필요

□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성공여부는 고객과 창구에서 접촉하고 있는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자율적인 보고에 달려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자금세탁방지제도의 내용 및 최근 동향 등에 대한 금융회사 임직원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교육은 매우 중요함

○ 의심거래보고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금융회사 종사자들의 자금세탁방지 업무교육과 원활한 보고를 위해서는 의심스러운 거래 모의보고 훈련시스템 등의 활용이 필요

□ ( )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이 대형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농협,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의 소규모 금융회사가 자금세탁의 사각지대가 됨

○ 사각지대의 자금세탁위험 관리를 위해 제도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필요  
○ 최근 저축은행 등의 불법대출 관련 비리 발생으로 내부통제 및 감시 강화가 요구되나, 이에 앞서 임직원의 투명거래에 대한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 필요

□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업권, 규모 등이 다양함에 따라, 획일적인 교육에서 탈피하여 대상자별, 권역별, 교육기관별로 세분화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

○ 검사자, 경영진, 일반직원 등으로 대상을 세분하는 한편, 은행권, 비은행권, 카지노 등 업종별 특성에 맞는 전문교육 실시  
○ 대규모 강당에서 진행하는 집합교육을 최소화하고 금융회사 자체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유도  
○ 미국의 경우, SAR 심사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심사전문가를 위해 교육을 별도로 실시  
- 심화교육을 통해 SAR 수집 데이터의 이해, 데이터 분석을 위한 Query 교육과정 개설  
- 교육 참가자 제한: FinCEN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교육 참여 가능

□ 2012년 호주 울롱공대학교(The University of Wollongong)에서 발표한 논문<sup>1)</sup>에 따르면,

호주 AUSTRAC AML 시스템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원인 중의 하나로 STR의 낮은 품질을 꼽고 있음. 이는 AUSTRAC 업무담당자 등을 위한 체계화된 교육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함

○ Compliance Quality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타겟팅된 교육(Targeted Training) 및 Feedback 필요함을 강조

□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선진화된 교육을 주도하고 있는 호주 AUSTRAC의 경우, 조직규모 및 복잡성 등을 고려한 컨텐츠 차별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약 80개의 사이버 교육프로그램(Session) 운영 중에 있음

○ 2010년 3월 발표한 AUSTRAC Survey 결과<sup>2)</sup>에 의하면,  
○ 사이버교육(e-Learning)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87.3%**가 해당 교육이 준법감시인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함

□ 최근 금융정보분석원이 소규모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제도 교육지원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소규모 금융회사 직원들은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중요성 인식 및 업무적용을 위해 보다 실효성있고 전문화된 교육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별첨 2] 설문조사결과 참조

## 1.2 금융정보분석원의 역할 및 성과

□ 금융정보분석원은 설립 이후,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안정적인 이행 및 정착을 위해 교육과 관련하여 다양한 노력을 해왔음

○ 첫째, 자금세탁방지제도 도입시, 금융회사의 제도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 금융회사 대상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함  
- 설명회를 통해 금융회사의 제도이행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 금융회사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실성있는 제도 구축에 기여  
- 또한, 검사수탁기관과 원활한 업무협조체계를 유지하고 검사정보의 상호교류를 위해 검사수탁부서장 등과 간담회 개최

○ 둘째,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교육자료, 최신자료 등을 수집 및 배포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자체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정기적으로 자금세탁방지제도 연차보고서, 사례집 등 발간

○ 셋째,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교육 사각지대인 지방소재의 금융회사 본지점 등을 대상으로 전국순회교육 등을 실시함

1) Mohammad Abdallah A Fattah AlRashdan, An evaluation of the AUSTRAC enforcement mechanism in regards to non-compliance with reporting obligations, The University of Wollongong Thesis Collection, 2012

2) AUSTRAC, AML/CFT Compliance Officers in Australia - AUSTRAC Survey Series No. 1, 2010.03

- , 교육활성화를 위해 관련 연수원의 교육프로그램에 자금세탁방지제도 과정을 개설 및 운영하도록 독려함
  - 금융회사 및 관련 연수원의 요청 시, 금융정보분석원 직원이 직접 출강 지원
- 다섯째, 교육감독지원시스템을 활용하여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평가 및 지도개선을 실시함
  - 평가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집중교육을 실시하여 자금세탁방지의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노력

□ 금융정보분석원의 연도별 주요 교육지원 내용 및 성과는 <표 1-1>과 같음

< 표 1-1 > 연도별 교육추진내용 및 성과

	추진내용 및 성과
~2004년	1) 관련 최신자료 수집 및 배포 2) 자금세탁방지제도 등에 대한 금융회사 설명회/간담회 개최 ▶ 2002년 31회, 2003년 13회, 2004년 9회 3) 금융회사 연수원의 자금세탁방지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권고 ▶ 2002년 30회, 2002년 30회, 2004년 42회
2005년	1) 금융회사 자체 교육자료 배포(인터넷 게재) 2) 자금세탁방지제도 등에 대한 금융회사 설명회/간담회 개최(17회) 3) 금융회사 연수원의 자금세탁방지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권고(총 44회)
2006년	1) 자금세탁방지제도 등에 대한 금융회사 설명회/간담회 개최(20회) 2) 금융회사 연수원의 자금세탁방지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권고(총 51회) ▶ 금융정보분석원 직원의 직접 출강 등 지원 3) 대형은행 대상 금융정보분석원 자체교육 실시(4회) ▶ 양질의 정보보고를 목적으로 실시: 국민, 우리, 하나, 신한 4) 전국 10개 생활권 소재 금융회사 대상 <b>전국순회교육</b> 실시(총 20회) ▶ 충북, 대전충남, 전북, 광주전남, 부산, 울산경남, 제주, 대구경북, 강원, 인천경기
2007년	1) 금융회사 연수원의 자금세탁방지 교육과정 운영 권고(총 68회) ▶ 금융정보분석원 직원의 직접 출강 등 지원 2) 금융회사 교육지원: 금융정보분석원 직원의 직접 출강 3) STR 품질향상을 위한 은행권 교육 실시 4) 비은행권 대상 STR 활성화 유도를 위한 교육 실시 ▶ 증권회사,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2008년	1) 교육인센티브 부여: 교육실적을 은행권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평가항목으로 추가 2) 금융회사 연수원의 자금세탁방지 교육과정 운영 권고(총 63회) ▶ 금융정보분석원 직원의 직접 출강 등 지원 3) 업권별 차별화된 교육 실시(은행권 vs. 비은행권) 4) 카지노 사업자에 대한 교육 실시(1회) 5) 검사자 자금세탁방지 전문교육과정 개설 및 교육실시(2회)

2009년	1) 금융회사 연수원의 자금세탁방지 교육과정 운영 권고(총 40회) ▶ 금융정보분석원 직원의 직접 출강 등 지원 2) 업권별 차별화된 교육 실시(은행권 vs. 비은행권) 3) 카지노 사업자에 대한 교육 실시(2회) 4) 검사자 자금세탁방지 전문교육과정 개설 및 교육실시(8회) ▶ 금융감독원과 공동 실시
2010년	1) 금융회사 연수원의 자금세탁방지 교육과정 운영 권고(총 42회) ▶ 금융정보분석원 직원의 직접 출강 등 지원 2) 카지노 사업자에 대한 교육 실시(2회)
2011년	1) 대상자별, 권역별, 교육기관별로 세분화된 맞춤형교육 추진 ▶ 대상자 세분: 검사자, 경영진, 일반직원 등 ▶ 업종별 세분: 은행권, 비은행권, 카지노 등 2) 금융회사 자체교육 실시 유도 ▶ 금융정보분석원은 전문검사자 및 경영진 교육 중점 진행

: 금융정보분석원 연차보고서

- 이와 같은 노력에 더불어, 최근 금융정보분석원은 선진화된 교육체계 수립을 위해 자금세탁방지제도 교육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 → 지원) 자율적인 교육문화 정립을 위한 민간중심의 교육 정착 지원

□ 민간중심의 교육체제로의 발전하기 위한 금융정보분석원의 노력은 다음과 같음

- 금융정보분석원은 전문검사자, 경영진 교육을 주로 담당하는 것으로 하고, 내부직원의 자금세탁방지 교육은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유도
- 금융회사 등이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의무교육을 실질적으로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자체교육의 내실을 다지도록 유도
- 영업점 창구직원 등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숙지도를 체크하는 등의 새로운 점검방식 도입
  - 이를 통해, 고객확인제도 등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창구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의 충실성, 업무숙지정도 점검

### 1.3 AML 교육운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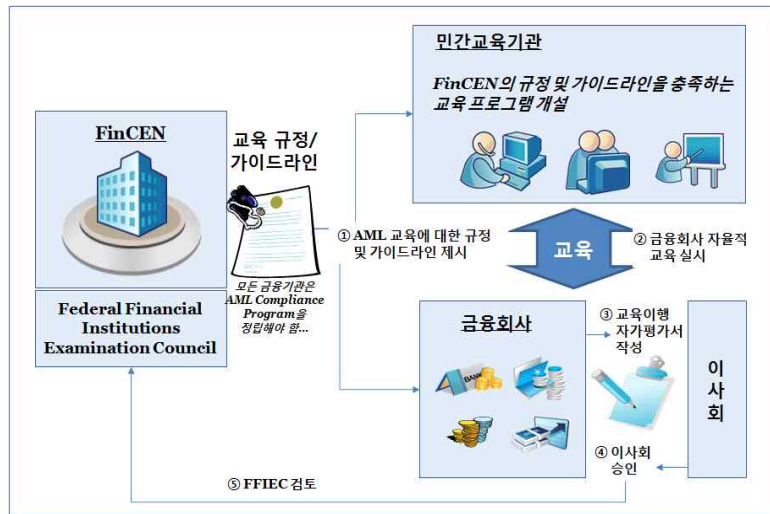
- 선진국 중 호주 AUSTRAC의 경우, 자금세탁방지제도와 시스템 수준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AUSTRAC을 중심으로 산업별 협회 등 민간단체와 연계한 교육 수행
  - 금융회사의 업종, 규모, 역량별 세분화한 교육컨텐츠 및 프로그램 운영

-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선진화 하는데 있어서 가이드 역할 수행

□ ( ) 미국의 경우, 현재 자금세탁방지 관련 교육을 정부기관 주도로 시행하지 않고, <그림 1-1>과 같이 금융회사 및 민간단체(민간교육기관)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음

- 정부기관은 교육에 대한 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 이에 기반하여 금융회사 및 민간단체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행한 다음, 자가평가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득함
-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자가평가서를 FFIEC(Federal Financial Institutions Examination Council)에서 검토하는 방식으로 운영함

< 1-1> 미국의 민간자율형 교육운영체계



### 1.3.1

- 교육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연속적인 과정’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함
  - 궁극적인 목표는 문제에 초점을 두고 처방이 가능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과,
  - 보고기관 및 모든 주요 외부관련자(Stakeholder)가 AML/CTF Act의 의무사항과 관련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임
- AUSTRAC의 교육은 대상자를 중심으로 ‘내부직원교육’과 ‘외부교육’으로 구분됨

□ 내부직원교육에 필요한 교육 및 기술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금융거래정보, 유형, 금융거래, 규제, 검사(Compliance), 새로운 금융상품, 국제협력 등 위험 및 산업 관련 지식

□ 외부교육은 산업협회 등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수행하며, Workshop 수준 이상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함

- 산업별 포럼 등을 개최하여 질문과 해결책에 대한 내용 공유

□ 또한, ‘One Size Fits All Approach’를 지양하기 위하여 외부교육은 보고기관인 금융회사의 규모, 업종, 업무의 복잡도 등에 따라 차별화함

- 대형 금융회사의 경우,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자체수행역량이 충분하고 투자에도 적극적이거나, 소규모 금융회사의 경우 자체 교육 및 훈련자원이 부족하고 투자에도 소극적임
- AUSTRAC Supervision Strategy 중 하나는 업종별 맞춤형 관리·감독·지도에 초점을 맞추는 것임<sup>3)</sup>
- 소규모 금융회사의 교육지원을 위해 e-Learning을 적극 활용함
  - 직접교육과 함께 온라인 교육 즉, 웹사이트를 통한 교육, e-Learning 등을 병행 실시
- 약 80여개의 다양한 교육과정(Session)을 운영 중에 있음

□ 산업별 협회를 이용하여 온라인 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함

- 온라인 교육은 쉽게 넓은 지역에 전파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짐
- 반면, 교육받는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렵고 교육교재가 복잡하고 이해되지 않으면 활용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간결하고 정확하게 표현해야 함
- (산업우선전략) 산업별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제공함으로써 파급효과(Ripple Effect) 극대화
- 다수의 소규모 금융회사와 접촉하는데 협회를 활용하면 한번에 여러 기관과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 및 통제가 효율적임

□ 또한, 산업별 위험에 따라 교육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음

- 법에 명시된 송금서비스 제공자(PDRS: Provider of Designated Remittance Services), 카지노사업자 등과 같은 고위험그룹은 AML 업무에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다 집중화된 전략적 접근 적용

□ 호주는 현재 AUSTRAC 주도로 AML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웹페이지를 통해 수강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표 1-2>와 같이 제공하고 있음

3) AUSTRAC Annual Report 2010-2011, 2011-2012 p.28

< 1-2> AUSTRAC 외부 홈페이지 제공 교육프로그램

	프로그램 특징
Introduction to AML/CF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음 개발한 외부 교육프로그램으로 싱가포르 회사에서 개발하였고, Flash File 또는 PDF File을 통해 접근이 가능함</li> <li>· Source, Glossary, Quiz 등을 통해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함</li> <li>· 교육관리 및 감독이 용이하도록 교육목록에 대한 인쇄 및 관리자서명 등의 기능을 추가함</li> <li>· Audio-On/Off 기능이 있음</li> <li>· 약 6개월의 기간을 투자하여 현재 제도내용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고, HTML File, Flash File, PDF File 등을 통해 접근 가능하도록 함</li> </ul>
AML/CFT Progr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USTRAC 내부인력 2명이 약 4개월 동안 개발함</li> <li>· 5개의 모듈로 구성되었으나, 과정을 순서대로 수강하도록 하는 것을 지양하고 선택적 수강이 가능하도록 함</li> <li>· 사례와 관련한 토론식 학습에 대한 방향을 제공함</li> <li>· 외부에 대한 매뉴얼을 충분히 제공하여 교육관리가 가능하도록 함</li> </ul>
AML/CFT Program (based on Docu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DF File로 구성되었고, 외부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활용하도록 함</li> <li>· AUSTRAC 내부에서 약 4개월간 개발을 진행함</li> </ul>
Outgoing Customer Due Dilige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ase Study 중심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법적인 문제인 인해 Case에는 가명을 사용함</li> <li>· 1명이 4개월 기간동안 개발함</li> <li>· 프로그램간 'Cross Walk' 이 가능하여 관련사항이나 공급한 내용이 있을 경우 바로 확인이 가능함</li> </ul>

온라인 교육 이외에도 교재형식의 다양한 교육자료를 제작 및 배포하고 있음

- Typologies Report: PDF로 작성되었고, 사례집과 유사한 형식
- Guidance Note: PDF로 작성되었고, 매뉴얼과 유사한 형식
- AUSTRAC Regulatory Guide: 제도에 대한 Big Book 역할
- Small Business Check-List
- 2010년 3월 발표한 만족도 조사결과<sup>4)</sup>, 해당 자료에 대한 준법감시인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Guidance Note: 약 99%, AUSTRAC Regulatory Guide: 약 97%, Typologies Report: 약 91%

- 2006년에 본격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시작하였고, 교육팀은 총 60여명으로 구성됨
  - 세부구성은 교육프로그램 운영담당자 약 30명, 교육프로그램 및 전략 개발 담당자 5명, 실무자 25명으로 이루어짐
  - 교육프로그램 담당자는 80% 정도가 시준에 따라 교환되는 인력임
    - ( ) 지식 및 노하우 축적이 어려움

4) 비율은 해당 자료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산정함

1.3.2

- 현재 미국은 FinCEN 등 정부기관이 자금세탁방지제도 교육을 주도하지는 않음. 정부기관은 교육에 대한 규정 및 가이드라인만을 제시하고 민간단체(민간 교육기관) 및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한 교육을 수행함
- 앞서 제시한 <그림 1-1>과 같이, 금융회사는 교육을 수행한 후에 자가평가서를 작성하고, 자가평가서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을 득(得)하여 Federal Financial Institutions Examination Council에 제출 및 검토를 받는 '민간자율형 교육방식' 을 적용 중임
  - FinCEN은 자체적으로 제작한 교육 비디오 또는 자료 등을 금융회사에 제공하지는 않고, 교육·훈련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SAR Guidance, 전략분석보고서, SAR 활동 보고서(Trends, Tips & Issues) 등을 배포
    - BSA(Bank Secrecy Act) 보고 및 문서 기록관리 요구사항에 대한 Guidance 발행
  - 또한, 주기적인 포럼, Workshop을 개최하여 자금세탁 관련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Webinar<sup>5)</sup>를 통하여 시간 및 공간의 제약없이 새로운 규정, 업계 트렌드, 뉴스 등의 공유 가능
- BSA에 규정된 모든 기관들은 다음을 포함한 Anti-Money Laundering Program을 수립 및 운영해야함
  - 내부정책, 절차 및 통제정책 개발
  - 준법감시인 지정
  - 지속적인 직원 교육프로그램
  - AML Program 테스트를 위한 독립적인 감사 기능 등
- 더 나아가서, BSA/AML Compliance Program에 따라 각 금융기관 자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함
- FFIEC(Federal Financial Institutions Examination Council)의 BSA/AML Examination Manual에 따르면, BSA/AML Compliance Program 검토 시에는 금융기관의 자체 교육프로그램에 다음의 요소가 적절하게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함
  - 지속적인 교육, 훈련, 준법을 시행하는 상급관리부처와 이사회의 중요성
  - 직원의 BSA Compliance 준수에 대한 책임
  - 개별적인 비즈니스 분야의 위험이 고려된 포괄적인 교육

5) 웹(Web)과 세미나(Seminar)의 합성어로서 인터넷상에서 열리는 회의를 말함. 오프라인 상에서 열리는 회의 대신에 음성이나 문서, 인터넷을 활용한 회의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웨비나는 새로운 정보교환장소로 떠오르고 있음. 조직내 커뮤니케이션 및 각종 발표 등에 활용되어 비용 뿐만 아니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개별적인 훈련
- 교육·훈련 주기
- 출석 및 교육·훈련자료에 대한 문서화
- 은행의 정책, 절차, 과정 및 규정과 규칙
- 의심스러운 행동의 예 및 식별과 관련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의 구분된 양식
- 내부정책 및 규정의 요구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의 벌칙

□ 은행, 증권, 신용대부업 등의 금융회사 관련 협회에서 실시하는 자금세탁방지 교육운영은 회원의 필요 또는 요청에 맞게 다양한 방식의 교육을 제공하는 형태임

- 미국 금융회사 관련 협회의 교육방식 및 최근 진행된 교육프로그램은 <표 1-3>과 같음

< 1-3> 미국 금융회사 관련 협회의 교육방식

	미국은행협회 (American Bankers Association)	미국선물협회 (National Futures Association)	신용협동조합협회 (Credit Union National Association)
교육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트레이닝</li> <li>· 강사인도방식</li> <li>· 자가학습</li> <li>· Frontline Compliance</li> <li>· e-Learning 토포교육</li> <li>· 토포트레이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ebinars</li> <li>· Podcasts</li> <li>· 비디오교육</li> <li>· 이슈와 답변 미팅</li> <li>· Worksho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Schools, Webinars</li> <li>· e-Book</li> <li>· 컨퍼런스</li> <li>· 온라인트레이닝</li> <li>· 세미나</li> </ul>
교육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ank Secrecy Act</li> <li>· BSA for Lenders</li> <li>· BSA for Tellers</li> <li>· Completing CTR</li> <li>· Customer Identification Progra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nti-Money Laundering Web Seminar</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SA 101 Part 1 &amp; Part 2</li> <li>· BSA - Watching the Watchdog</li> <li>· BSA Trends In Payment Systems</li> <li>· BSA/OFAC/CIP Member Business Compliance Issues</li> </ul>
홈페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ww.aba.com/ABA/Compliance/compliance_portall1.html</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ww.nfa.futures.org</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ww.cuna.org</li> </ul>

□ 신용협동조합협회의 경우, 관련 업종 종사자를 위해 Conference, On-Line 교육 등 다양한 방식의 프로그램을 구비하고 있음

- Conference: 공유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년에 1회 유료로 개최하며 BSA의 개정내용 및 FinCEN의 최신정보 등을 참여사들간에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http://www.cuna.org/training-education/event/BSATX12/>

- ( **차별화된 교육**) On-Line 교육프로그램: 관련 업무종사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구비하고 있고, 정기 교육과정 개설에 의한 교육수행이 아니라, **On-Demand 형식**으로 진행함
  - Bank Secrecy Act for Member Business Lending Staff
  - BSA for Consumer Lending Staff
  - BSA for New Accounts Staff
  - BSA for Operations Staff
  - BSA for Tellers 등

- (Recorded Webina) Webina를 통한 교육 등을 녹화하여 필요에 따라 On-Line 수강이 가능하도록 재사용하기도 함  
- 최근 'Bank Secrecy Act 101 Part 1 & Part 2' 에 대한 교육 수행 등

- 효율적인 전사원교육을 위해 **Training Bundle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6개월 또는 1년에 사용하는 비용 지불만으로 CUNA에서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음  
- 예) CUNA Training Bundle Options

Training Bundle Options	
Six Month	\$2,499
One Year	\$3,999

### 감독기관 교육

□ 미국 FinCEN은 2012년 7월 FinCEN 사용자들의 커뮤니티인 FinCEN Portal을 오픈함

□ FinCEN Portal의 접근 및 접근권한은 철저하게 통제되고 관리되고 있음

- FinCEN의 승인을 받고 인증장치가 있어야만 접속 가능
  - Treasury Department인 경우: PIV(Personal Identification Verification) Card
  - Non-Treasury Department인 경우: 인증을 위한 Security Certificate File 다운로드

○ 접근권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 ① 2년마다 BSA(Bank Secrecy Act) 컴플라이언스 의무교육프로그램을 수료해야하고,
- ② 90일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야하며,

적어도 90일에 한번 이상 정기적으로 시스템에 접속해야 함

- FinCEN Portal은 그동안 흩어져있던 FinCEN의 기능 및 교육프로그램을 사용자들이 간편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구성한 종합 포털사이트임. 주요 기능 및 제공 교육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음
  - BSA 데이터의 적절한 공시 및 사용을 위한 BSA 의무교육·훈련 제공
  - 프리젠테이션, 정책, 핸드북, 리서치, 교육자료, 전자식 도서관(EKL: Electronic Knowledge Library) 자료 등 다양한 형식의 교육자료 제작 및 배포
  - FinCEN Portal을 통해 FinCEN 쿼리 웹어플리케이션과 레포트 등과 같은 최신의 FinCEN 툴(Tool) 사용 가능
  - FinCEN Portal 및 쿼리 웹페이지 트레이닝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FinCEN Portal과 FinCEN 쿼리 웹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소개 및 사용방법 교육
    - Job Aids: 시스템과 어플리케이션 사용을 돕기 위한 추가적인 레퍼런스 자료
    - Quick Reference Guide: Query 사용을 위한 가이드북
    - Online Help: 특정 주제 부합한 절차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제공
- (Recorded Webinar) 이밖에도 수시로 자금세탁방지제도 이슈를 논의하기 위한 Webinar를 주최하고, 녹화된 Webinar를 홈페이지에 공유함으로써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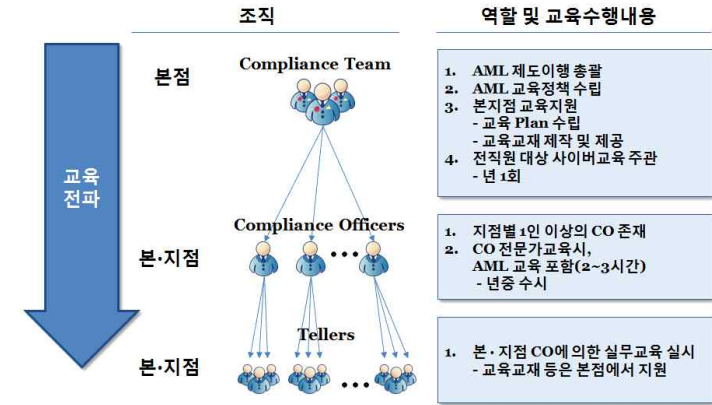
## 1.4 금융회사 AML 교육추진 현황

- 우리나라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5조에 금융회사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자체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실제 금융회사의 교육추진 현황은 은행권, 비은행권, 소규모 금융회사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 은행권의 경우, 대형 은행을 중심으로 2008년부터 금융정보분석원과 함께 자금세탁방지제도 교육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현재 은행 자체적으로 본점과 지점이 상호연계된 교육을 수행 중임
  - 보험, 증권 등을 포함하는 비은행권의 경우는 일부분의 제1그룹에서만 전사원 대상의 e-Learning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고, 제2그룹 등은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소규모 금융회사의 경우, 대형 금융회사와 달리 자체 교육수행 역량이 부족하여 소수의 업무담당자들만이 협회를 통한 교육을 받고 있고, 전사원 교육을 위한 교육컨텐츠 등의 지원이 요구됨

### 1.4.1

- 2008년을 기점으로 본지점간 연계교육체계를 수립하여 전직원 교육에 대한 기반을 다진 대형 은행의 일반적인 교육체계는 <그림 1-2>와 같음

< 1-2> 은행권 자금세탁방지 교육체계



- ( )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교육은 자체 제작한 교육자료를 이용하거나 관련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대부분 사이버교육 형태이고, 1회 교육시간은 1시간 ~ 1.5시간
- (전문교육) 각 지점의 준법감시인(CO: Compliance Officer)에 대한 교육은 일반적으로 본점 준법지원팀에서 주도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본점 준법지원팀(Compliance Team)에서 수시로 실시하는 전문가교육에 2-3시간 분량의 자금세탁방지제도 교육 포함
    - 전국 지역별 거점을 중심으로 집합교육 실시
- (실무교육) 지점별 창구직원은 해당 지점의 준법감시인에게 교육을 받음
  - 본점 준법지원팀에서 제작 및 배포하는 교육교재를 바탕으로 교육 실시
  - 준법감시인은 교육실시 후, 교육에 대한 피드백을 본점 준법감시팀에 전달
- 지금까지 교육방식은 집합교육, 교재 기반 자가학습, 사이버교육 등이 대부분이었으나, 최



교육활성화를 위해 채널을 다양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 (m-Learning) 우리은행의 경우, 사이버 교육컨텐츠를 모바일 장치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

### 1.4.2 (보험, 증권 등)

- 비은행권은 그 규모에 따라, 제1그룹과 제2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제1그룹: 대형 보험사와 대형 증권사 포함
  - 제2그룹: 중소형 보험사와 중소형 증권사 포함
- 제1그룹의 일부 대형 보험사와 대형 증권사만이 자체 교육컨텐츠를 활용한 전사원 e-Learning 교육을 수행하고 있음
- 제2그룹의 경우, 전사 차원의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 ) 지금까지 은행 중심의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비은행권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수준이 다소 낮은 편임
  - (중선효과) 은행권의 감시감독 강화로 인해 비은행권의 자금세탁 위험 또한 증가
- (문제점) 비은행권의 경우, 제도 이해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없음
  - 업무종사자들의 제도 이행에 대한 공감대 형성 미흡
- (AML 담당자 교육 필요) 현재 비은행권의 AML 담당자들은 제도 이행에 대한 이해수준이 낮아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를 보완할 별도 교육 또는 교육프로그램이 없음
  - AML 담당자의 이해수준 저하로 인해 자금세탁 관련 보고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자금세탁 위험 급증
- (협회 교육프로그램 활용) 자체교육이 어려운 경우, 금융투자협회 등 관련 협회의 교육프로그램을 연계하여 활용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일반과정/ 실무과정/ 전문과정으로 세분된 교육과정 개설

### 1.4.3 소규모 금융회사

- 금융정보분석원이 인력 및 예산부족으로 인해 자체교육이 미흡한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등의 소규모 금융회사를 전국 12개 생활권별로 나누어 직접교육을 실시함
  - 의심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제도 관련 업무담당자 대상

- 신용협동조합은 2010년, 새마을금고는 2011년부터 외부기관과 연계하여 전직원 교육을 수행하고 있음
  - 고용보험 환급과정으로 연 18시간의 사이버교육 실시

-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일반교육은 외부기관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준법감시인 및 창구직원 등을 위한 전문교육/ 실무교육 등은 전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 (검사수탁기관 전문교육 미흡) 소규모 금융회사의 경우, 중앙회가 검사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나 검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금융정보분석원에만 의존하고 있음
  - 금융정보분석원은 관련 교육 전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확장 및 교육주도 한계 존재
  - 따라서, 검사자의 전문교육을 위한 전문가 또는 전문교육컨텐츠 마련이 시급

- 소규모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의 교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2년 10월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실용성 및 전문성 있는 교육 필요

-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약 75.8%가 ‘교육내용의 전문성 또는 실용성’이라고 응답함
- 다수의 기타의견에 ‘사례중심의 실효성 있는 교육’, ‘STR 작성법에 대한 실무교육’, ‘딱딱한 개념교육 보다는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 전문가에 의한 교육 등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함

#### ○ 업무와의 연계성이 강화된 교육 필요

-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교육내용 중 업무적용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약 35.2%가 ‘자금세탁방지제도 적용 및 위반사례’라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개념(약 18.4%) 및 업무처리 프로세스(약 17.9%) 등으로 응답함(복수응답 허용)
- 금융회사별 응답에는 차이가 존재하였고 이는 금융회사별 차별화된 특성을 반영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 사이버교육 또는 집합교육 활성화 필요

- 선호하는 교육방식으로는 응답자의 약 95.0%가 사이버교육 및 집합교육이라고 응답하였고, 모바일교육에 대한 선호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 기타 주요 의견으로는 자체 교육역량의 부족으로 인해, 동영상 교육자료, 교육교재 및 업무 매뉴얼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등이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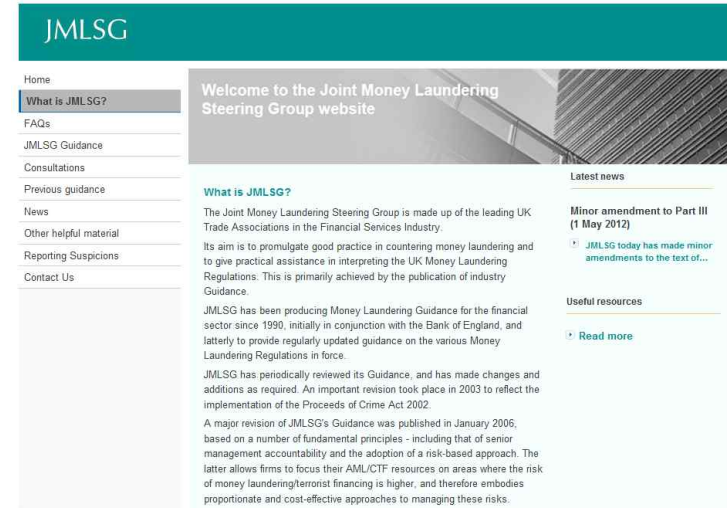
## 1.5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금융정보분석원 주도로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으나, 금융회사의 수가 많고 업권, 규모, 복잡성 등이 다양하여 모든 금융회사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함

- 지금까지의 교육컨텐츠는 제도에 대한 설명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컨텐츠의 다양성 및 전문성이 낮았기 때문에 형식적인 교육을 벗어나지 못했음
  - 업무와 연계한 실용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사례 중심의 교육 요구
-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금융회사의 경우 순환보직제(Rotation)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세탁방지제도 업무에 대한 지식 및 노하우 축적 등을 통한 전문성을 보장하지 못함
  - 자금세탁방지 업무는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 및 STR/ CTR 보고 등 금융정보분석원과의 교류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일정수준 이상의 관련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에 의한 수행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일정 수준의 전문지식 또는 자격을 보유한 직원이 지속적으로 업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 필요
  - 호주 AUSTRAC Survey 결과, 준법감시인(CO)들이 꼽은 가장 중요한 이슈는 ‘스텝들에 대한 교육 실시’ 와 ‘자신들의 지식 및 역량 향상’ 으로 나타남
- 전문성 보장 및 전문가 육성을 위해서는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금세탁방지제도 관련 교육인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더 나아가서, 교육 및 교육인증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민간협회 등을 설립하는 방안이 필요함
  - 호주 AUSTRAC 교육개발팀의 경우, 참여인력의 약 80% 이상이 시즌에 따라 교체되고, 타 업무와 병행하기 때문에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지식축적 등의 효과가 부재할 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결여되는 문제 발생
  - 미국의 경우, FinCEN이 아닌 금융회사 및 민간단체(민간 교육기관) 주도로 자금세탁방지교육을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FinCEN 등 정부기관은 모니터링을 통한 감독·통제 역할만 수행
  - 영국의 JMLSG(Joint Money-Laundering Steering Group)의 경우, 금융업 관련 협회의 모임으로 1990년부터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Guidance 제작 및 배포

- 민간협회 중심의 정책 실행
- JMLSG가 정책에 대한 Guideline을 제시하고 정부기관과 협의하는 등 금융회사와 정부기관 간의 중재자 역할 수행

< 1-3> 영국의 JMLSG 홈페이지(www.jmlsg.org.uk)



-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협회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상적인 협회의 역할은 JMLSG와 같음
- 미국 FinCEN과 같은 민간자율형 운영방식이 원활하게 정착하고, 궁극적으로 민간협회가 영국의 JMLSG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호주 AUSTRAC과 같이 정부기관 주도의 Infra 구축 및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 2. 교육강화 전략

### 2.1 전략체계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목표로 많은 활동을 해왔고 그로인해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는 등 긍정적 성과를 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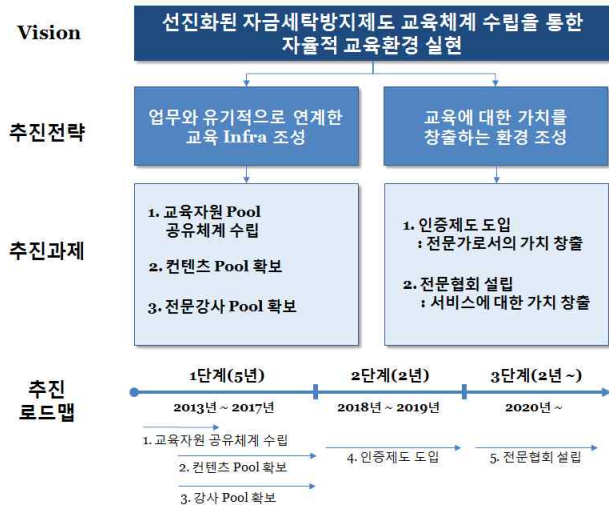
- FATF 등의 권고 및 지적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그 분야에 집중한 실행방안 중심의 활동이 이루어지다 보니 교육 등의 중점과제에 대한 추진체계가 다소 미흡하였음
- 이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교육강화 전략체계를 수립하여 전략 추진과제 실행 및 달성에 대한 목표의식을 부여하고자 함

□ 자금세탁방지제도 교육강화 전략에 대한 궁극적인 비전은 선진화된 자금세탁방지제도 교육체계를 수립함으로써 자율적 교육환경을 실현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음

- 다변화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투명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해,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모습은 제도에 대한 자발적인 실천이 활성화되는 것임
- 제도에 대한 자발적인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및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함

□ 본 보고서에서는 비전 달성을 위한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교육강화 전략체계를 <그림 2-1>에 제시된 것과 같이, 2대 추진전략과 5개 주요 추진과제로 구성함

< 2-1>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교육 강화를 위한 전략체계도



### 2.2 기본방향

□ ( **교육**) KoFIU 등 정부기관 주도의 교육체계에서 금융회사와 민간 등 민간 중심의 교육체계로 전환함

□ 민간 중심의 교육체계에서 KoFIU의 핵심 역할은 다음과 같음

- 첫째, STR 보고 및 적발사례 등 민간 Side에서 접근하기 힘든 자료를 제공하여 교육의 질 제고
- 둘째, 교육진행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및 모니터링을 통해 교육독려 및 원활한 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지원
  - 교육이수여부 점검 및 교육성과 모니터링 등 수행

□ ( **융합**) 개별 금융회사별 교육운영방식에서 금융회사간 소통 및 협력을 기본으로 한 교육 운영방식으로 전환함

- 교육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간 교육자원 공유 활성화
- 금융회사 규모에 상관없이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

□ ( **소프트파워 육성**) Infra 확보 중심의 교육운영체계에서 소프트파워 육성 중심의 교육체계로 전환함

- 체계적인 교육 Infra를 바탕으로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실무를 겸비한 다수의 전문가 육성

□ ( **제도 개선**) 선진화된 교육체계에 부합하는 법령, 조직 등의 제도를 개선함

- 인증제도 도입에 따른 관리조직 및 법령 정비
- 전문협회 설립에 따른 관리조직 및 법령 정비

### 2.3 추진전략

□ 선진화된 교육체계 수립을 위한 2대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음

- 업무와 유기적으로 연계한 **교육 Infra** 조성
- 교육에 대한 **가치**를 **창출**하는 환경 조성

자금세탁방지제도 교육과 업무와의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요구 발생 시, 적시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Infra**를 수립함

- 자금세탁방지제도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개인과 조직 모두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2.4

- 2대 추진전략에 따른 5개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음
  - 교육자원 운용체계 수립
  - 교육컨텐츠 Pool 확보
  - 전문강사 Pool 확보
  - 교육인증제도 도입
  - 전문협회 설립
- 주요 추진과제에 대한 세부 추진과제 리스트는 <표 2-1>과 같음. 5개의 주요 추진과제에 대한 세부 추진과제는 총 12개로 구분함

< 2-1> 세부 추진과제 리스트

	추진과제	세부 추진과제
업무와 유기적으로 연계한 교육 Infra 조성	1. 운용체계 수립	1-1 교육자원 관리체계 수립
		1-2 교육자원 공유 및 활용체계 수립
		1-3 공유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2. 교육컨텐츠 Pool 확보	2-1 차별화된 사이버 교육컨텐츠 확보
		2-2 교육특성별 특화된 교육교재 확보
	3. 전문강사 Pool 확보	3-1 금융회사별 교육전파 전문인력 양성
3-2 금융회사 전문강사 양성 및 확보		
교육에 대한 가치를 창출하는 환경 조성	4. 교육인증제도 도입	4-1 AML 인증제도 개발
		4-2 AML 인증관리체계 수립
		4-3 관련 법/제도 개정방안 수립
	5. 전문협회 설립	5-1 AML 전문협회 설립
		5-2 관련 법/제도 개정방안 수립

## 2.5 추진 로드맵

- 자금세탁방지제도 교육강화 전략 실행을 위한 추진 로드맵은 Infra 구축을 통한 양적성장을 기반으로 하여 인증제도 및 전문협회 설립에 이르는 질적성장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전개함
- 추진 로드맵의 실행기간은 중장기로 하고 <표 2-2>에 제시한 것처럼, 추진과제의 특성에 따라 실행단계를 3단계로 구분함
  - 본 보고서에서 중장기는 2013년을 시작으로 10년 내외의 기간을 일컫음
  - 인증제도 마련과 협회 설립의 순서는 주관기관의 전략적 방향성과 운영의 효율성 및 적절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 협회를 우선 설립할 경우, 협회를 통한 법정자격/인증제도 도입이 가능하므로 정부 기관 주도의 자격/인증제도에서 민간 주도의 자격/인증제도로 이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음
    - **(예상 문제점)** 자격/인증제도에 대한 평가절하, 자격 부여 주체에 대한 혼란, 신/구 자격증 동일시화의 어려움 등
- 단기 우선 시행과제로는 (추진과제 1)에 포함되어 있는 ‘소규모 금융회사의 교육활성화를 위한 교육컨텐츠 제작 및 보급’을 채택하였음
  - 자금세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중요성 및 시급성 측면에서 우선시 되는 과제임

<표 2-2> 중장기 전략추진 로드맵 개요(案)

	1단계	2단계	3단계
추진기간	2013년 ~ 2017년 (5년)	2018년 ~ 2019년 (2년)	2020년 ~ (2년 ~)
추진목적	Infra 구축	인증제도 마련	협회 설립
	← 양적성장 →	← 질적성장 →	
주요 수행활동	[※] 소규모 금융회사의 교육활성화를 위한 교육컨텐츠 제작 및 보급  • [추진과제 1] 교육자원 관리체계 수립	• [추진과제 4] 교육인증제도 도입	• [추진과제 5] 전문협회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 2] Pool 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과제 3] 전문강사 Pool 확보</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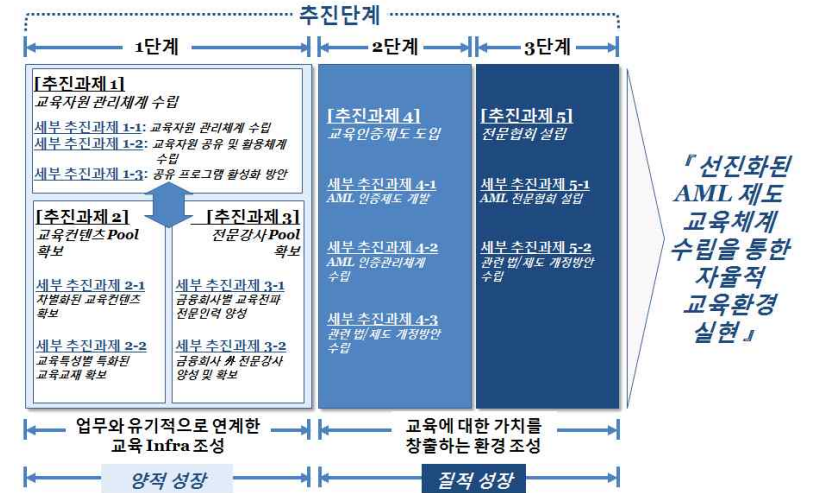
[ ] 단기 주요추진과제, 실행방안은 [별첨 1] 참고

### 3. 실행방안

본 장에서는 <표 2-2>에 언급한 중장기 추진 로드맵의 각 단계별 추진 세부과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함

□ 전략체계와 추진 세부과제별 관계는 <그림 3-1>과 같음

< 3-1> 전략체계와 추진과제의 관계도



#### 3.1.1 추진과제

- 1 **주요 목표**는 교육컨텐츠 및 전문강사에 대한 교육자원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활용 및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것임. 이를 통하여 교육자원 측면의 양적인 성장을 이루고, 업무와 유기적으로 연계한 교육 Infra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 추진전략임
- (추진과제 1)에서는 (추진과제 2)와 (추진과제 3)을 통해 Pool로 구성할 교육자원을 활용 및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함. 이와 더불어, 관련 업무종사자들 간의 인적교류 촉진을 위한 공유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방안에도 대해서도 논의함
- 이를 위해, (추진과제 1)의 세부 추진과제는 아래와 같이 (세부 추진과제 1-1), (세부 추진과제 1-2), (세부 추진과제 1-3)으로 구분함

- **추진과제 1-1:** 관리체계 수립
- **세부 추진과제 1-2:** 교육자원 공유 및 활용체계 수립
- **세부 추진과제 1-3:** 공유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 **(추진과제 2)**에서는 교육자원 중 교육컨텐츠 Pool을 확보하고자 함. Pool에는 교육전과를 위해 e-Learning 등에 활용하는 교육컨텐츠와 교육보조자료, 자가학습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교재 등이 포함됨

□ 따라서, (추진과제 2)의 세부 추진과제를 아래와 같이 (세부 추진과제 2-1)과 (세부 추진과제 2-2)로 구분함

- **세부 추진과제 2-1:** 차별화된 교육컨텐츠 확보
- **세부 추진과제 2-2:** 교육특성별 특화된 교육교재 확보

□ **(추진과제 3)**에서는 교육자원 중 교육 전문강사 Pool을 확보하고자 함. Pool에는 현재 금융회사 또는 유관기관에 재직 중인 전문가와 현재 재직 중은 아니지만 과거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등이 포함됨

□ (추진과제 3)의 세부 추진과제는 아래와 같이 (세부 추진과제 3-1)과 (세부 추진과제 3-2)로 구분함

- **세부 추진과제 3-1:** 금융회사별 교육전과 전문인력 양성
- **세부 추진과제 3-2:** 금융회사 전문강사 양성 및 확보

### 3.1.1 ( 1) 교육자원 활용 및 관리체계 수립

□ (추진과제 1)에서는 (추진과제 2)와 (추진과제 3)에서 확보할 교육자원을 체계적으로 활용 및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업무담당자들간의 교류 촉진을 위한 공유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함

□ (추진과제 1)의 세부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이 구분됨

- **세부 추진과제 1-1:** 교육자원 관리체계 수립
  - 전문강사 관리체계
  - 교육컨텐츠 관리체계
- **세부 추진과제 1-2:** 교육자원 공유 및 활용체계 수립
- **세부 추진과제 1-3:** 공유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 . (세부 추진과제 1-1) 교육자원 관리체계 수립

#### 1) 전문강사 관리체계

□ 금융회사 내외부의 전문강사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 및 운영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 자금세탁방지 분야의 전문인력 확보 및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체계적인 교육 인력공급망(Supply Chain) 조성
- 전 금융회사 및 관련 기관간의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 전문강사관리는 크게 두가지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전문강사교육)** 강사 품질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 **(강사관리시스템)** 체계적인 강사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 **(강사교육)** 자금세탁방지 관련 교육을 수행하는 전문강사의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 및 관련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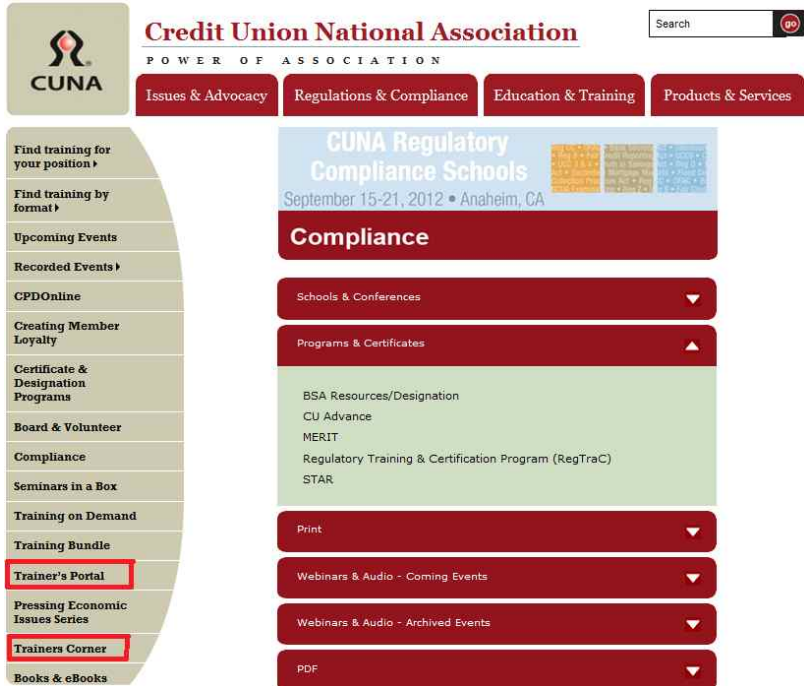
- 현재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실정상, **단기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이 강사교육에 대한 주체 역할을 수행해야 함

- 교육의 기본인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와 검사방향 및 지침 등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기반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민간협회 등이 부재함
- 금융정보분석원 주관의 강사교육을 수행함으로써, 정부의 정책방향과 민간의 이해방향이 일치할 수 있음

- 장기적으로는 금융정보분석원의 역할을 대체할 주체가 전문강사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형성되거나, 교육 등을 전문으로 하는 협회 등이 설립되어 관련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음.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민간주도의 교육운영을 달성함을 의미함

□ **(강사 커뮤니티 형성)** 자금세탁방지제도 전문강사를 위한 전용 커뮤니티 등을 활성화하여 강사들간의 관련 정보교류 등을 촉진함으로써 자발적인 주체의식을 육성할 수 있음

- 예) 미국 CUNA의 Trainer 전용 커뮤니티: Trainer's Corner & Trainer Porter
  - <http://www.cuna.org/training-education/comp/index.php>



( ) 금융정보분석원을 주관으로 강사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강사 등록 및 활동이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실제 수행한 강의에 대한 피드백을 수집 및 반영하는 등의 사후활동관리에 대한 운영체계 수립이 필요함

□ 전문강사 관리체계에 대한 주체간의 관계 및 강사활용흐름에 대한 예시는 <그림 3-3>과 같고, 금융정보분석원 및 금융회사의 역할관계는 아래와 같음

□ **금융정보분석원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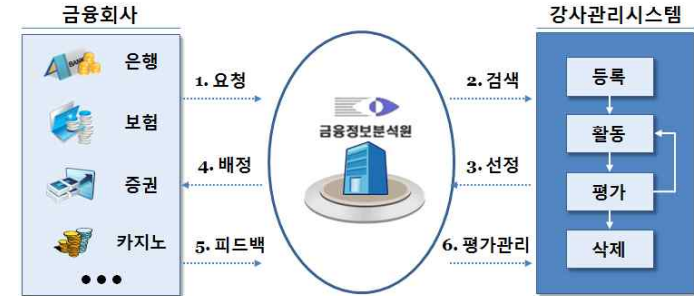
- 강사관리시스템 등에 의한 전문강사 관리
  - 등록, 활동, 평가(교육 후 피드백), 삭제 등
- 금융회사와 강사 연결
- 강사에 대한 품질관리 및 동기부여
  - 국가공식 우수활동강사 표창, 강의 우선배정 등

□ **금융회사의 역할**

- 등록된 전문강사에 대한 이력관리 및 동기부여
- 등록된 전문강사 적극 활용

- 강사교육 후 피드백 제공

< 3-3> 전문강사 관리 및 활용체계



□ (시스템 구축) 강사관리 프로세스인 등록 → 활동 → 평가 → 삭제 등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서는 강사관리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

- 강사관리의 주체가 금융정보분석원인 경우, 회원이 기존 금융회사와 동일하므로 ‘금융포털’을 활용할 수 있음
  - 강사관리 기능 추가

□ (운영 ) 관리체계의 초기 주관주체는 정부기관(금융정보분석원 등)이 맡음으로써 관련 금융회사의 참여를 유도하고, 안정적인 정착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민간협회의 이관 등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도모함

2) **관리체계**

□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사이버 교육자료 및 교육교재 등과 같은 콘텐츠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관리체계가 필요함

□ 교육콘텐츠 관리체계 수립 시 고려해야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음

- 보안수준
- 최신성 유지
- 중복성 관리 등

□ (보안수준) 보안수준은 콘텐츠의 공개범위를 정하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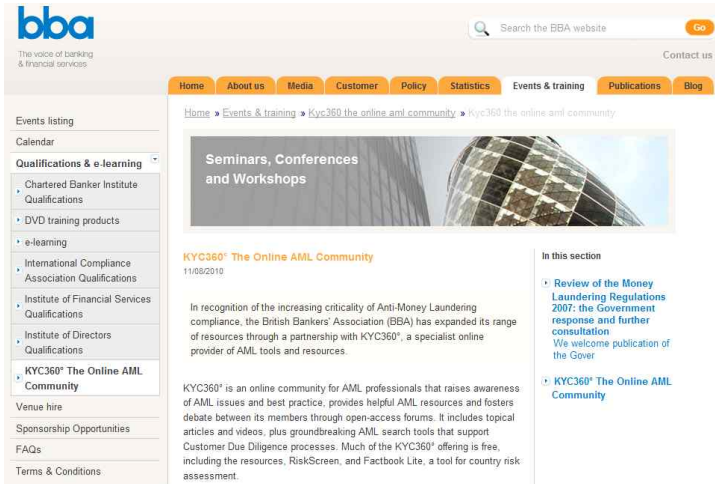
- 금융회사의 경우, 자사의 정보가 포함된 콘텐츠를 제약없이 공개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금융회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개범위 즉, 보안수준을 결정함
- 보안수준 구분
  - 전체공개: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한해 공개
  - 부분공개/ 합의 후 공개: 금융회사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금융회사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해 공개
  - 비공개: 금융정보분석원의 교육콘텐츠 Pool에는 등록하나, 금융회사의 기밀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가 불가한 경우
- 공개의 1차적인 대상은 각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업무책임자 또는 보고담당자 등을 의미함
  - 각 금융회사의 지적자원 보호를 위한 방편임
- ( **유지**) 교육콘텐츠 Pool을 운영하는 것의 핵심 장점 중의 하나는 제도에 대한 최신 사상의 반영임. 이를 위해서는 콘텐츠 이력관리가 필요함
  - **이력관리**
    - 콘텐츠 생성일, 생성자, 변경일, 변경자, **변경내용**, 유효기간 등을 시스템적으로 관리
    - 효율적인 이력관리를 위해서는 관련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 필요
- (**중복성 관리**) 콘텐츠의 중복 생산을 최소화하고 재사용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콘텐츠 Pool에 대한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음
  - 콘텐츠 등록 또는 콘텐츠 제작기획 시 유사 콘텐츠 검색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능 추가
  - 콘텐츠 Pool 관리 시, 초기 운영주체인 금융정보분석원이 목차 및 요약내용을 바탕으로 콘텐츠간 유사성에 대한 평가 시행
    - Tag 활용 또는 콘텐츠 정보에 유사 콘텐츠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 추가
- 콘텐츠 Pool 운영 초기에는 **단기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의 주관 하에 콘텐츠에 대한 관리 노력이 요구되고, 장기적으로는 금융정보분석원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민간협회 등에 이관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세부 추진과제 1-2) 교육자원 공유 및 활용체계 수립

-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교육자원 공유 및 활용을 통해서 교육품질의 표준화 및 교육자원 생성 및 관리에 대한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음

- 교육품질의 표준화
    - 제도이해 및 이행에 대해 통일되고 일관성 있는 커뮤니케이션 가능
  - 교육자원 생성 및 관리 효율성 강화
    - 시간, 비용 등의 노력 대비 고품질의 자원 생성 가능
  - (**포털시스템 구축**)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공유 및 활용을 위해서는 교육자원을 통합 및 연계할 수 있는 포털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 전문강사인력 Pool 및 교육콘텐츠 Pool의 데이터베이스화/ 시스템화
  - **단기적으로는** 금융정보분석원의 의심스러운거래 3.0 프로그램 또는 KoFIU 포털사이트 등 이미 운영 중인 웹사이트에 기능을 추가하여 교육자원의 공유매체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금융정보분석원을 운영주체로 함으로써 금융회사들로부터 신뢰를 획득하여 참여 및 활성화를 유도하는데 유리함
  - 장기적으로는 금융정보분석원의 역할을 대할 수 있는 자금세탁방지제도 전문협회 등을 설립하여 교육자원을 통합운영하고 포털시스템 또한 독립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임
    - **영국** 경우, 은행연합회인 BBA(British Banker's Association)의 Portal을 이용한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음
      - 은행을 비롯한 금융업 종사자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각종 자원을 공유하는 커뮤니티
      - 영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금융 관련 이슈 총괄
      - 200여개 이상의 금융회사를 대표함
- < 3-4> BBA 홈페이지([www.bba.org.uk](http://www.bba.org.uk))





뿐만 아니라,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종사자 및 전문가를 위한 별도의 온라인 커뮤니티, **KYC360°** 를 운영하고 있음

- BBA에서 운영하는 **KYC360°** 는 자금세탁방지 전문가를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로 업종 별 현업간 자금세탁 방법 등에 대한 정보 공유
  - 최근 <그림 3-5>와 같은 웹사이트로 독립
- AML Tool 및 자원 공유
  - AML 관련 Hot Topics, Articles, Videos, Forum 정보, Due Diligence를 위한 각종 데이터, 국가별 Risk 데이터 등
  - Facebook, Twitter 등의 Social Media를 통한 법률 및 가이드 홍보
  -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해 관심있는 전세계 전문가들에게 커뮤니티 오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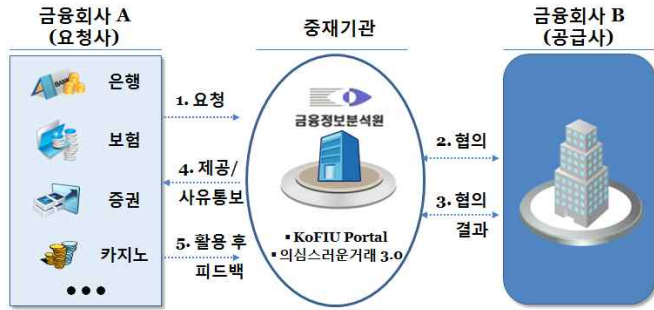
< 3-5> 영국의 KYC360°([www.kyc360.com](http://www.kyc360.com))



□ 교육자원 공유 및 활용을 위한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회사간의 역할관계 및 절차는 <그림 3-6>과 같음

1. : 자금세탁방지 관련 교육을 위해 교육자원이 필요한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의 채널을 통해 정보제공을 요청함
2. **협의:** 금융회사(A)로부터 교육자원 제공요청을 받은 금융정보분석원은 해당 자원의 소유권이 있는 금융회사(B)와 제공여부에 대한 협의를 하거나, 소유권 또는 결정권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있는 경우 자체판단을 위한 검토를 함
3. **협의결과:** 협의결과 즉, 제공 또는 불가에 대한 결정을 함
4. **제공/ 사유통보:** 협의결과에 따라 교육자원을 공유하거나 공유가 불가능한 경우 사유에 대해 전달함. 이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은 요청 금융회사와 함께 대안을 모색함
5. **활용 후 피드백:** 교육자원을 공유받은 금융회사는 교육자원에 대한 활용 후 피드백을 금융정보분석원에 전달함. 금융정보분석원은 이 피드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교육자원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반영 및 활용함

<그림 3-6> 교육자원 공유체계



**. (세부 추진과제 1-3) 공유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이행이 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련 업무담당자간 인적 네트워크 형성이 필수적임

- 지금까지는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정보교류 창구로써 금융정보분석원의 포털시스템이 주요 역할 수행
  - 하지만, 제도 및 가이드라인을 업무에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다양한 이슈들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 공유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음
  - 실제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담당자들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이슈를 친분관계가 있는 동종업계의 업무담당자에게 문의 및 논의하는 경우가 다반사임
  - 따라서, 자금세탁방지 업무담당자들간의 인적교류 활성화가 필요함
- 금융정보분석원은 지금까지 업무담당자의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공유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왔음
- 대표적으로 Workshop, 우수사례 발표회 등이 있음
  - Workshop 또는 우수사례 발표회와 같은 공유 프로그램은 핵심내용을 집중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관계자간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뿐만 아니라, 자금세탁방지제도 관련 최신 법·제도 개정사항, 국내의 동향, 자금세탁수법 등을 전달하는데도 유용함
- 금융정보분석원 주관 하에 비정기적으로 공유 프로그램이 시행되어 왔으나, 공유 프로그램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함
- **우수사례 발표회:** 금융정보분석원의 주관 하에 연 1회 개최 등과 같이 정례화
    - 우수사례 및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주요 매체 홍보 등의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참여를 활성화 함

- **Workshop:** 금융정보분석원의 주관하에 업권별 연 1회 개최 등과 같이 정례화
  - 동종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사례, 이슈 공유,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임
  - Workshop을 통해 논의된 내용을 관련 정책수립 및 개정 시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활성화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할 수 있음
  - 금융회사별 업무담당자의 참석을 필수로 하고, 불참 시 참여기회 박탈 또는 Penalty 부과 등의 정책을 적용함
- 장기적으로는 금융정보분석원의 주관의 강제적인 Workshop을 지양하고 업종별 협회 등의 주관으로 자율적인 Workshop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함
- 업종별, 직급별로 세분화 하여 실무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교육·훈련을 제공함
- 금융회사별 Workshop 비율도 교육·훈련을 이행한 한가지로 방안으로 인정하여 교육통계시스템에 반영함

**3.1.2 ( 2) 교육컨텐츠 Pool 확보 개요**

- 교육컨텐츠는 소모성 상품이 아니고 재사용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원화(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아래와 같은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있음
- 교육컨텐츠 중복제작 최소화
  - 투자비용 및 노력 최소화
  - 재사용을 통한 교육전파 최대화
    - 자체교육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금융회사 등에게 특정 절차에 따라 교육컨텐츠를 공유함으로써 대형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의무 수행
- (정의)** 교육컨텐츠 Pool은 금융정보분석원을 포함한 유관기관 및 개별 금융회사가 자금세탁방지제도 교육을 위해 제작하는 다양한 유형의 교육컨텐츠를 한곳에 모아 중점관리 및 활용하는 것을 일컫음
- (참여자 인센티브)** 우리나라는 대형 은행 및 대형 보험사에 한해 자체제작한 교육컨텐츠 및 교재를 보유하고 있음. 컨텐츠 Pool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이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자료제공 및 공유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이 필요함
- (소규모 금융회사 등 지원)** 특히, 소규모 금융회사와 같이 전직원에게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전과교육을 시키기 위한 교육자료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컨텐츠 Pool을 활용한 자원공유를 통해 효율적 지원이 가능함
- (통제 효과)** 더 나아가서, 컨텐츠 Pool을 일괄관리하게 되면 제도에 대한 내용의 추가·변

· 삭제 등이 발생한 경우 갱신관리체계에 의해 체계적인 변경관리를 할 수 있음

○ 콘텐츠의 일관성 및 최신성 관리 가능

**. (세부 추진과제 2-1) 차별화된 교육콘텐츠 확보**

□ 약 6,000개의 금융회사를 효율적으로 교육하는데 가장 파급효과가 큰 방식은 사이버교육 임. 따라서, 사이버 교육콘텐츠를 업권별, 규모별, 관련 업무역량별 차별화하여 교육에 활용하는 것이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임

□ 교육콘텐츠의 세분화 수준은 <그림 3-7>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음.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금세탁방지제도 교육에 대한 대부분의 콘텐츠는 대상에 대한 구분 없이 획일적인 교육을 위한 것으로 제도 이해를 위한 설명중심으로 구성되어있음

- 단계적 세분화를 통해 ‘복합적인 기준에 의한 세분화’ 수준으로 교육콘텐츠 구분 필요
- ‘복합적인 기준에 의한 세분화’ 수준에 이르면, 활용 중심의 Case Study가 활성화되어 업무와의 연결성이 향상됨

< 3-7> 교육콘텐츠 세분화 수준



□ 최근 사이버 교육콘텐츠에 대한 업권별·역량별 차별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현재 금융투자협회에서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역량에 따라 교육과정을 일반, 심화, 전문과정으로 구분하여 개발
  - KoFIU 강사진 참여
- (One Size Fits All Approach 노력) 업권별 Case Study 일부 포함
  - 은행과 증권 적용사례 구분

□ 다양한 기준에 의해 콘텐츠 차별화를 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표 3-1>의 콘텐츠 세분화 기준을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참가자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함

< 3-1> 교육콘텐츠 세분화 기준

	세분항목
회사규모	, 소규모 등
직무역량	공통, 일반, 전문, 실무 등
업권	은행, 비은행(보험, 증권, 카지노 등) 등
교육유형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자기학습, 토론식교육 등

□ (실무중심의 교육콘텐츠)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수준이 안정적인 제도에 오른 대형은행 과 소규모 금융회사 및 비은행권의 경우에 요구되는 교육콘텐츠 수준 또한 다름

- (은행) 보고서 질 제고에 중점을 두어 사례 및 우수보고서 중심의 교육콘텐츠 개발
- (비은행) 자금세탁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임원 대상 교육콘텐츠, 실무자들이 인터넷 과 스마트폰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콘텐츠 개발

□ 특히, STR 작성 담당자의 경우, STR의 올바른 작성법에 대한 Needs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STR 작성에 대한 올바른 가이드라인 및 Teaching 방식을 통한 교육이 가능한 콘텐츠 제작이 필요함

□ (콘텐츠 개발 주체) 콘텐츠 개발은 세분영역별 전문지식 보유 및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주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금융정보분석원: STR 또는 심사 관련 전문교육 중심의 콘텐츠에 집중
  - STR 작성 관련 교육
  - 심사전문가 대상의 전문교육
  - 소규모 금융회사를 위한 교육콘텐츠 등
- 금융 관련 협회: 업종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콘텐츠에 집중
  - 관련 협회의 업종 특성을 반영한 사례 중심의 교육콘텐츠 등

□ 교육콘텐츠 Pool에 세분화된 콘텐츠를 확보하여, 제도 이해에 기반이 되는 기본역량과 업무와 연관된 심화교육을 선택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교육을 최소화 하고 교육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음

**. (세부 추진과제 2-2) 교육유형별 특화된 교육교재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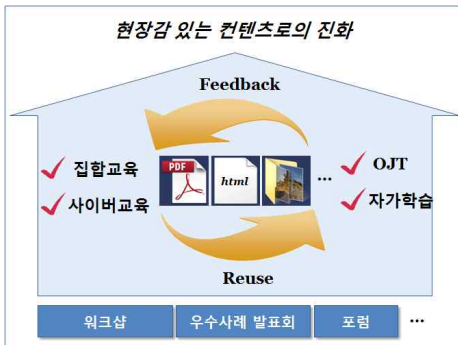
교육의 적절성 및 효과성을 고려하였을 때, 교육유형별 교육대상을 차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해당 구분에 따른 교육교재 또한 구분할 필요가 있음. 교육유형별 적절한 교육대상에 대한 구분은 아래의 <표 3-2>와 같음

< 3-2> 교육유형 및 대상 구분

교육유형	전직원	업무수행자 (Teller)	실무담당자 (CO)	임원	심사전문가
집합교육			●	●	●
사이버교육	●	●	●		●
자가학습	●	●	●		●
OJT (On-the-Job-Training)		●	●		●

-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시에는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교재를 제공하여야 하고, 제공된 교육교재는 자가학습 및 OJT 교육에 재활용함으로써 **연결성**을 강화할 수 있음. 뿐만 아니라, <그림 3-8>에 나타난 것처럼, 자가학습 및 OJT 교육에서의 Feedback을 바탕으로 교육교재의 내용을 보완함으로써 현장감 있는 콘텐츠로의 진화를 실현할 수 있음

< 3-8> 교육교재 활용의 선순환



-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Workshop, 우수사례 발표회, 포럼 등의 자료 또한 자금세

탁방지 교육교재의 품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원천임

- 따라서, 교육유형 및 교육대상에 따라 특화된 교육교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교육에서의 활용뿐만 아니라 교육 이후에도 실무에서 참고할 수 있는 매뉴얼 성격의 교재개발 필요
- 물리적인 관점에서의 교육교재 종류는 PDF file, html file, Flash file, Book 등이 있음

**교육교재 내용 구성 방향**

- 금융정보분석원은 2008년 이후부터 교육교재 등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운영 방향 및 자금세탁방지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있음
- 특히, 자금세탁수법, 의심거래보고서 우수사례 등과 같은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실무위주의 현장감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고, 관련 법률 재개정 시 주요내용을 반영하여 금융회사 임직원이 변화된 제도환경에 보다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토론식 자가학습 교재)** 더 나아가서, 금융회사별 특성에 최적화된 교육을 위해서는 토론식 자가학습 교재 등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함
  - 사례 중심의 Case Study 교재 필수
    - 영국, 호주 등은 협회 차원에서 Case Study 교재 및 테마 제공
  -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간 자가학습 모두 가능
  - **(최신 IT 기술 활용)** 자가학습 진행에는 온라인 회의인 Webinar 등 활용 가능
- 뿐만 아니라, Teaching 기법 및 토론식 자가학습을 접목한 교육교재를 개발 및 활용함으로써 관련 지식의 실무직결형(**Hands-On Experience**) 교육실현이 가능함
  -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
- Case Study 교재개발 시에는 법적인 이슈를 고려해야 함
  - Case에 반드시 가명 사용
  - 개발 후 법률자문가를 통한 Feedback 절차 수행 필요
- 후주의 설문조사결과, 매뉴얼 등에 대한 만족도 및 인지도가 높게 나타남. 이에 Quick Reference 형식의 교재 배포 및 활용을 활성화하는 것도 필요함
  - **(Quick Reference)** 업무상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내용 또는 제도이해를 위해 필수적인 내용을 핸드북 형태로 만들어 소지하게 함으로써 필요시 즉시 활용이 가능한 형태로

- 예) 업무경험 10년 이상, 금융정보분석원 강사교육 이수 등

교육대상별 차별화된 교육교재 개발 시에 고려해야할 대상별 주요 교육내용은 <표 3-3>과 같음

< 3-3>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주요 교육내용
전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 개념적 이해</li> <li>·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중요성</li> <li>· 자금세탁방지제도 위반 사례</li> </ul>
업무수행자(Teller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이해</li> <li>· 자금세탁방지제도 실무적용 및 관련 고객 응대방안</li> <li>· 의심스러운 거래 사례 및 의심거래보고서 작성법</li> </ul>
실무담당자(C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이해</li> <li>· 자금세탁방지제도 검사감독방향 및 관련 법률 위반사례</li> <li>· 자금세탁방지제도 실무적용 및 관련 고객 응대방안</li> <li>· 의심거래보고서 및 고객현금거래보고서 작성법</li> </ul>
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중요성 및 회사에 미치는 영향</li> <li>· 자금세탁방지제도 위반 사례</li> </ul>
심사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금세탁방지제도 검사감독지침</li> <li>· 의심거래보고서 관련 데이터 흐름 및 데이터 분석역량</li> </ul>

### 3.1.3 ( 3) 전문강사 Pool 확보

- 사이버교육이나 문서(교재, 매뉴얼 등) 기반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이해도 증진 등의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강사에 의한 대면교육(집합교육)의 역할이 중요함
  - 전직원 대상의 일반교육보다는 실무교육 및 전문교육에 대면교육이 필수적임
- 현재, 대면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참여 강사는 금융정보분석원 직원 또는 소수의 전문가<sup>6)</sup>로 한정되어 있어 수( )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 따라서, 관련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에서 관련 업무경험 보유자를 중심으로 전문강사를 육성 및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함
  - 전문강사에 대한 구체적 자격요건 정립 필요

6) 새금융사회연구소 등이 있음

그에 대한 방안으로는 금융회사별 교육전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기타 유관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육성하는 것 등이 있음

- **추진과제 3-1:** 금융회사별 교육전과 전문인력 양성
- **세부 추진과제 3-2:** 금융회사 외 교육강사 양성 및 확보

더 나아가서, 전문강사를 필요로 하는 금융회사에 안정적이고 체계화된 지원을 위해서는 금융회사별 교육전과 전문인력과 기타 전문강사 등을 중심으로 ‘전문강사 Pool’을 구축하고 이에 대한 조직적 관리가 필요함

- 전문강사 Pool에 소속된 강사에 대해서는 중앙기관<sup>7)</sup>의 지도 및 관리감독 필요
  - 정기적인 교육 실시 및 교육품질 모니터링 등

전문강사 Pool 운영시 특장점

- 일관된 교육 제공 가능
- 다수의 금융회사에 교육기회 확대
- 교육에 대해 일관된 품질보장 등

#### . (세부 추진과제 3-1) 금융회사별 교육전과 전문인력 양성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은 전반적인 제도이해에 대해서는 전 금융회사가 동일하나,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금융회사별 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업무와의 연계성 및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융회사의 현황 및 실정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면서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이해를 겸비한 사내 전문인력을 기반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최선임

- 외부인력이 단기간 내에 금융회사 업무를 이해하고 업무와 교육을 연계하는 것은 불가능
- 교육전과 인력의 금융회사 업무처리현황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불필요한 교육 최소화 가능

금융회사 차원에서는 금융회사 내부정보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면서 해당 업무에 대한 지식을 형식지화(形式知化)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지속적인 환경적 변화요구에 유연한 대응 가능

7) 금융정보분석원 등 제도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이해를 주도할 수 있는 기관을 의미함

- 업무에 대한 연속성 확보
- 사내 교육전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차원의 지원 및 정부기관 차원의 지원이 모두 필요함
  - 금융회사 차원의 지원
    - 교육전과 전문인력 지정 및 동기부여
  - 정부기관 차원의 지원
    - 전문인력에 대한 정기적 교육 등을 통한 품질관리
    - 금융회사별 전문인력 육성 및 지정 등에 대한 제도화

. (세부 추진과제 3-2) 금융회사 전문강사 양성 및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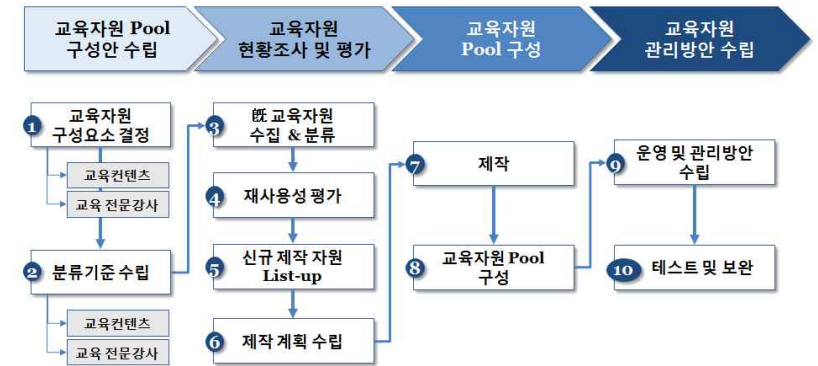
-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관련 업무경력자 또는 유관기관 퇴직자 등을 중심으로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강사로서 활동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해당 업무종사자에게 **비전 제시**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업무경력자) 과거 금융회사 업무종사자의 경우, 업무환경이 유사한 금융회사에 대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교육이 가능함
  - 우리나라 금융회사 특성상, 현재 경쟁사 또는 동종업종에 종사 중인 강사에게 자사직원에 대한 강의를 맡기는 것은 정서에 어긋나지만, 퇴사 후인 경우는 거부감이 완화될 수 있음
- (유관기관 퇴직자) 과거 자금세탁방지 관련 정부기관 종사자의 경우, 제도에 대한 이해 및 파급효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음
- 과거 업무경력자 또는 유관기관 퇴직자 등과 같은 금융회사 외의 전문강사를 양성 및 확보하는 방안은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 1: 자율지원제) 관련 Job에 대한 홍보를 통해 퇴직자 중 지원을 받는 형식
    - 지원자 심사제도 등에 대한 추가 도입 필요
  - (案 2: 권고제) 금융정보분석원 등이 해당 업무종사자 List를 보유하고 있다가 퇴직정보 등 확인 시 Job에 대한 권고를 하는 형식
    - 해당 업무종사자에 대한 범위 및 List 관리 등에 대한 체계 필요
  - 운영의 효율성 및 개인의 자율권을 존중해 준다는 관점에서는 (案 1)의 자율지원제 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3.14 실행방안

#### 가. 실행내용

- (추진과제 2) 교육컨텐츠 Pool 및 (추진과제 3) 교육 전문강사 Pool을 기반으로 한 교육자원 Infra 확보를 위해서는 <그림 3-9>의 절차에 따른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함

< 3-9> 교육자원 Infra 확보절차



- **교육자원 Pool 구성안 수립**은 교육컨텐츠 및 교육 전문강사를 주요 교육자원으로 정의하고, 분류기준을 정의하는 것을 일컫음

- ① **교육자원 구성요소 결정**
  - 본 보고서에서는 교육컨텐츠와 전문강사를 교육자원의 필수 구성요소로 정의함
  - 교육자원 구성범위 결정
    - : 예) 금융회사와 금융정보분석원 제작 및 보유자원 한정 등
- ② **분류기준 수립**
  - Pool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자원을 분류하기 위한 기준 마련
  - 교육컨텐츠 분류기준 및 전문강사 분류기준 별도 구분
  - 이후 확장가능성을 고려한 분류기준 수립
  -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의 담당자들의 의견 적극 반영

- **교육자원 현황조사 및 평가**는 교육자원을 제작된 자원과 신규제작 및 확보가 필요한

구분하는 과정으로 기존 자원의 재사용성 등을 평가하여 결정함

○ **교육자원 수집 & 분류**

-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에서 제작 또는 보유하고 있는 교육자원 수집
- 수집된 교육자원을 분류기준에 기반하여 분류
- 교육자원 수집에 대한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의 참여 유도가 필수이므로 금융정보분석원의 역할 필요

○ **④ 재사용성 평가**

- 수집된 교육자원에 대하여 품질, 최신성, 수정 노력 등을 기준으로 평가
- 재사용 가능여부 판정
- 재사용 불가능한 교육자원 활용방안 마련

○ **⑤ 신규 제작 및 확보 자원 List-up**

- 교육자원 Pool 분류기준에 근거하여 재사용 가능한 자원을 제외하고 신규 제작 및 확보가 필요한 자원 List 생성
- 자원 List에 대한 신규 제작 및 확보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 신규 제작 및 확보 자원 확정

○ **⑥ 신규 제작 및 확보 계획 수립**

- 자원의 신규 제작 및 확보 계획 수립
- 제작일정, 제작예산, 제작주체 등 정의
- 제작 및 확보 후 유지보수 방안 수립

□ **교육자원 Pool 구성**은 제작 및 확보가 계획된 자원을 실제로 제작 및 확보하여 Pool 구성을 완성하는 단계임

○ **⑦ 제작 및 확보**

- 시급성 및 중요성을 고려한 우선순위 적용
- 신규 콘텐츠 제작
- 신규 전문강사 확보 등

○ **⑧ 교육자원 Pool 구성**

- 수집 자원과 신규 제작 및 확보 자원 결합
- 중복성 및 완결성 확인

□ **교육자원 관리방안 수립**은 구성된 교육자원 Pool을 활용하기 위한 금융회사간 공유체계를 수립하여 실행하고, 운영테스트를 통해 문제점 등을 보완하는 단계임

○ **⑨ 운영 및 관리방안 수립**

- 교육자원 Pool 운영방안 수립: 금융회사간 공유체계
- 교육자원 Pool 관리방안 수립
- 공유 프로그램 활용방안 수립

○ **⑩ 테스트 및 보완**

- 교육자원 Pool의 운영 및 활용 Test
- Test 결과분석 및 보완사항 도출
- 보완 적용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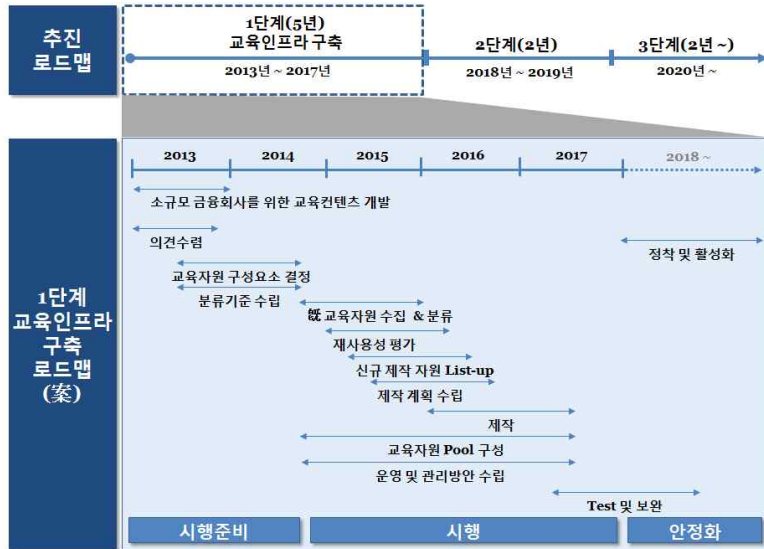
□ **(실행주체)**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이 자체 보유하고 있는 교육자원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자발적 참여가 가장 중요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참여에 대한 강제성을 부여할 수도 있음. 이에 적절한 주체는 정부기관, 즉, 금융정보분석원임

□ **(인센티브 부여)** 금융회사의 참여를 유도할 때는 교육자원 Pool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설명 및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져야하고, 교육자원 Pool 운영에 참여했을 때 참여사 또는 참여기관이 얻게 되는 효과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 실행 로드맵**

□ 전략 추진 1단계는 교육 Infra를 구축하는 단계로, 이를 위한 (추진과제 1), (추진과제 2), (추진과제 3)에 대한 실행 로드맵은 <그림 3-10>과 같음

< 3-10> 1단계 추진과제 실행 로드맵(案)



(            단계) 단기 추진과제인 콘텐츠 Pool 및 전문강사 Pool을 확보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본격 시행을 준비하는 단계임

- 교육자원 Pool 운영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견수렴
- 교육자원 Pool 운영 및 공유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이슈 등 검토(저작권 등)
- 콘텐츠 및 전문강사 Pool 구성요소 및 구성범위 결정
- (금융정보분석원) 전문강사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 또는 교육방안 수립
- 교육자원 Pool 및 공유 시행에 대한 가이드라인 작성 및 금융회사에 배포

□ (시행 단계) 본격적으로 교육자원을 확보하고, 공유 및 활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테스트를 거쳐 본격적으로 교육자원의 공유 및 활용을 시행하는 단계임

- 교육컨텐츠 수집 및 제작
- 전문강사 모집 및 육성
- 교육자원 운영방안에 근거하여 공유 및 활용 테스트 시행
- 공유 및 활용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제기된 문제점의 수정 보완
- 금융회사간 자금세탁방지제도에 관한 교육자원 공유 실행

□ (안정화 단계) 본격 시행한 교육자원 공유 및 활용제도에 대한 정착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단계임

- 제도 실행 후 발생하는 문제점 보완
  - 참여사인 금융회사의 의견 적극 반영
- 전문강사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등을 통한 품질관리
- 교육컨텐츠에 대한 최신성 유지 등의 품질관리
- 금융회사 홍보를 통한 공유제도 이용 활성화

### . 실행 성공요소

- (참여유도) 교육 Infra 구축단계는 무엇보다도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임. 교육 자원에 해당하는 강사 및 콘텐츠의 기반이 금융회사에서 비롯되므로 적절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필요함
- (정부주도) 각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위해서는 도입 초기 정부의 주도가 무엇보다 중요함
- (품질관리) 공유된 교육자원의 활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문강사와 콘텐츠의 품질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함
- (보안체계 등 신뢰성 확보) 교육자원을 공유하는 금융회사에 정보유출, 저작권 등에 대해 안전하다는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보안체계를 수립함



### 3.2 2 추진과제

2 **주요 목표**는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것임. 즉, 객관적 근거에 기반하여 자금세탁방지 전문가를 육성하고 이를 통해 교육에 대한 가치를 창출하는 질적인 측면의 성장을 달성하는 것이 핵심 추진전략임

- (추진과제 4)에서는 자금세탁방지 인증제도에 대한 필요성 및 도입절차 등을 수립하고, 도입한 인증제도의 관리체계를 수립함. 이와 더불어, 관련 법과 제도의 개정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함
- (추진과제 4)의 세부 추진과제는 아래와 같이 (세부 추진과제 4-1)과 (세부 추진과제 4-2)로 구분함
  - 세부 추진과제 4-1: AML 인증제도 개발
  - 세부 추진과제 4-2: AML 인증관리체계 수립
  - 세부 추진과제 4-3: 관련 법/제도 개정방안 수립

#### 3.2.1 ( 4) 교육인증제도 도입 개요

-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경우, 순환보직제도(Rotation)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시급한 실정임
- 따라서, 장기적인 비전을 바탕으로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전문지식을 축적 및 활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로서의 가치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인증제도’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교육인증자격제도) 자격은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지식, 기술의 습득정도를 판단하고 직무수행능력과 전문성을 인정하는 방법임<sup>8)</sup>
-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 업무는 주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업무담당자의 업무능력에 대한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자격/인증제도를 도입하여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한 전문인력 육성 기반을 갖추고자 함
- 교육인증자격 취득자는 실전형 전문인력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됨은 물론 전문인력이 되기 위한 목표의식을 가지게 됨으로써 자금세탁방지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는 동력이 됨

- 선진국의 경우, 협회 등과 같은 민간단체가 정부의 인가를 받아 자율적으로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자격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동종업계 종사자들 커뮤니티 활동도 활성화되어 있음
  - 반면, 국내의 경우 자격증 보유 전문가, 관련 민간협회, 커뮤니티 활동 등이 선진국에 비해 비활성화 되어 있음

#### . (세부 추진과제 4-1) AML 인증제도 개발

##### 1) 해외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 검토

- 해외 자금세탁방지 인증제도로는 <표 3-4>와 같이 CAMS, FIBA AMLCA/ CPAML, ICA Certificate 등이 있음.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세계의 AML 자격증 모두 협회주관으로 운영
  - 일정 교육을 이수해야만 응시자격 부여
  - (Continuing Education) 또한, 전문성 및 자격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 요구

< 3-4> 해외 인증제도 요약

인증제도 구분	CAMS (Certified Anti-Money Laundering Specialists)	FIBA AMLCA/ CPAML (The Florida International Bankers Association)	ICA Certificate (International Compliance Training Certificate)
시행국가		미국	영국
시행협회	ACAMS (Association of CAMS)	FIBA	ICA
취득 현황	160개국 약 13,500명 (국내 취득자: 10여명)		전세계 약 10,000명
주요 특징	· 국제적으로 가장 인지도가 높음 · Off-Line Test · 사전교육 40 Credits을 획득하여야만 응시자격이 부여됨	· 자격증을 2단계로 구분하고 단계적으로 취득하게 함 - FIBA AMLCA - FIBA CPAML · 금융기관 종사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함	· 지역별 Localization - International, 싱가포르, 호주,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 · 자격증을 3단계로 구분하고 단계적으로 취득하게 함
홈페이지	www.acams.org	http://www.fibatraining.net/pages/FIBAAMLCA	http://www.int-comp.com/certificates-diplomas-ict

8) 제1장 제2조

해외 자격/인증제도 적용 및 도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전세계 국가마다 금융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 ① 자금세탁방지제도 적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상호 차이가 존재하고,
  - ② 제도에 대한 기본개념에 대한 테스트가 주로 수행될 뿐 국내 금융제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으로 인한 전문성 제고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 연구결과에 의하면,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일반적인 내용이나 은행 중심의 교육 및 훈련은 실무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sup>9)</sup>
- 둘째, 해외 자격증에 대한 이해도가 낮음
  - 해외자격증 취득에 대해 인지도가 낮고, 그에 따른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자격취득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지 못함
- 셋째, Global 인재양성에 대한 장점은 있으나, 국내 전문인력에게는 영어 등과 같은 불필요한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됨
  - 자금세탁방지 제도에 대한 지식 보다는 영어실력이 당락의 결정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 자격시험 응시 및 멤버쉽 가입비용 등에 대한 비용부담이 발생하고, 이는 외화유출로 이어짐
- 넷째, 국내 전문인력의 자격획득 및 갱신 현황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움
  - 전문인력 프로필 및 자격 관련 데이터의 Ownership이 해외 자격인증협회 등에 있음

## 2) 사례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 영국 등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교육인증제도로는 CAMS, FIBA Certificate, ICA Certificate 등이 있음

### ) CAMS(Certified Anti-Money Laundering Specialists)

- ACAMS(Association of Certified Anti-Money Laundering Specialists)에서 주관하는 자격증으로 국제적으로 가장 인지도가 높음
- ACAMS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CAMS 자격 소지자가 미소지자 보다 14%의 임금을 더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제한**) ACAMS 자체 기준을 설정하여 40 Credits를 획득하여야만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응시자격이 부여됨
- (**응시방법**) Off-Line 테스트를 시행하며, 한국에서도 응시 가능

○ (**자격유지**) 자격증 소지자의 자격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Continuing Education 요구

### < 3-5> CAMS 구성내용

CAMS Credential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ocument a minimum of 40 qualifying credits based on education, professional experience and training</li> <li>· Provide three professional references</li> <li>· Be of high moral character</li> </ul>
컨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isks and methods of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m financing</li> <li>· Compliance Standards for Anti-money laundering(AML) and 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CFT)</li> <li>· AML Compliance program</li> <li>· Conducting or Supporting the investigation process</li> </ul>
시험응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ff-Line, 120</li> <li>· 응시시간: 3시간 30분</li> </ul>
자격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e-Certification을 위해 3년간 60 Continuing Education Credits 이수 필요</li> </ul>

### 나) FIBA AMLCA/ CPAML

- 2005년 FIBA와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가 함께 FIBA AML Institute 설립
  - AML 교육, AML 자격증, Industry Best Practice 제공
- AML 자격증을 2단계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취득하도록 함
  - 일반과정: FIBA AMLCA(The Anti-Money Laundering Certified Associate)
  - Advanced 과정: FIBA CPAML(Certified Professional in Anti-Money Laundering)
- 금융기관 종사자로 응시자격 제한
- 일정기간의 교육수료 후 자격시험 응시 가능
- 세가지 형태의 교육수강이 가능하며, On-Line Test 가능
  - On-Line/ Class Room/ In-House Training
- In-House Training은 금융기관의 요청에 따라 수행하고, 요청 금융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개별적인 교육 및 테스트
- 자격증 소지자의 자격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Continuing Education 요구

<표 3-6> FIBA 추최의 자격시험 구성내용

9) Mohammad Abdallah A Fattah AlRashdan, An evaluation of the AUSTRAC enforcement mechanism in regards to non-compliance with reporting obligations, The University of Wollongong Thesis Collection, 2012

	FIBA AMLCA	FIBA CPAML
준비	· · Pre-Class Reading List 완료	· AML 관리감독 경험 3년 이상 · Classroom Program 이수(Case-Study, 토론)
형태	· 온라인 트레이닝 · Classroom 트레이닝 · Private Training(Customized)	· Classroom 트레이닝 · Private Training(Customized)
컨텐츠	·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 · 이론에서 실무까지: AML 위험기반접근 · 내부통제로 인한 위험 감소 · 자금세탁 위험 인식: 모니터링, 인식, 조사, 보고 · 감사와 법적 조사 준비 · 관리자와의 훈련과 대화	· 위험평가의 발전 및 실행 · KYC 업데이트 및 권고 지도 · 조사보고서 또는 감독을 통한 규정 준수 관리 · 일별, 주별, 월별 과업리스트를 통한 AML 부서 관리 · 거래모니터링 시스템의 선택 및 실행 · SAR의 조사 및 문서화
용시방법	· 테스트유형: 객관식 100 문제 · 응시시간: 1시간 45분(온라인) · 합격조건: 75% 이상	· 테스트유형: 3개 에세이 · 응시시간: 3시간 30분(온라인) · 합격조건: 80% 이상
자격유지	· 2년에 20시간 교육이수	· 매년 10시간 교육 이수

### ) ICA Certificate

- ICA(International Compliance Association)에서 주최하는 국제자격증
- 영국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에 특화된 자격증 발급
  - International, 싱가포르, 호주,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
- 자격증은 전문성의 정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어 있고, 단계적으로 취득 가능
  - 1단계: ICA Certificate in AML Awareness
  - 2단계: ICA Advanced Certificate in AML
  - 3단계: ICA Diploma in AML
- 영국 맨체스터 비즈니스 스쿨로부터 Qualification Award 수상
- 세가지 유형의 교육수강이 가능하며, On-Line Test 가능
  - On-Line/ Classroom Training/ In-House Training
- 일정기간의 교육수료 후 자격시험 응시
  - 'Exam Only' 선택 시 세미나 참석 후 시험응시 가능

구분	ICA Certificate in AML Awareness	ICA Advanced Certificate in AML	ICA Diploma in AML
준비	· 정상적인 학문배경 · 영어	· 정상적인 학문배경 · 영어	· 학위, 자격증 등의 학문배경 또는 ICA Advanced Certificate in AML 취득 · 관련분야 최소 3년 경험
교육형태	· On-Line/ Workshop/ Private 트레이닝(Customized)	· On-Line/ Workshop/ Private 트레이닝(Customized)	· On-Line/ Workshop/ Private 트레이닝(Customized)
컨텐츠	<b>Core Modules</b> · 자금세탁의 이해 · 자금세탁방지제도 · 자금세탁활동의 정의 · 보고 위험의 관리 · Terrorist Financing · PEP Risk · 영국자금세탁방지제도 <b>Specialist Modules</b> · Trust and Corporate Service Providers(CSP) · 은행/ 보험/ 투자 · 관리	· 국제동향 · 법, 규제 Framework · 실무에서의 AML · 체계 · 고객확인 의무(CDD) · 자금세탁과 Terrorist Financing의 위험관리 · 거래 모니터링과 필터링 Framework · SAR 작성 등 · 새로운 산업분야 · Escalations and Exits	· AML과 Combating Terrorist Financing(CTF) · 고객식별, 고객위험 프로파일링과 모니터링 · 체계 · 파이낸셜 서비스 산업에서의 포괄적인 AML과 CTF Framework 설계 · 관리 및 리더십 · 의심스러운 활동과 의심거래보고 및 정부와의 대처
교육기간	1 ~ 3개월	6개월	9개월
용시방법	객관식(1시간)	· 오픈북 테스트(1시간 15분) · 2,500 ~ 3,500자 에세이	· 오픈북 테스트(3시간 15분) · 2 x 3,000자 에세이
자격유지	필수요건 아님		

해외 교육인증제도에 대한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교육인증자격제도를 도입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실행주체 정의
- 인증방식: 수료증 vs. 자격증
- 자격증 체계
- 운영방안 등

### 3) 인증제도 도입 필요성

필요에 따라, 해외 자격/인증제도 활용하는 것도 국제적 전문가 양성 측면의 긍정적인 효

있지만, 국내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내 실정에 맞는 자격/인증제도 도입이 우선시됨

□ 국내의 경우 자격증 보유 전문가, 관련 민간협회, 커뮤니티 활동 등이 선진국에 비해 비 활성화 되어 있음

- 국제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자격증 보유자는 10여명에 불과함(CAMS)
  - 자격증 취득에 대한 보상유인 전무( 無)
- 현재 국내 제도 기준으로는 실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격증 등이 필수요건은 아님
- 국내에는 자금세탁방지제도 자격증을 관리할 수 있는 정부기관 또는 민간기관이 부재함

□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자금세탁방지 및 투명한 금융사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최초로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과정’ 이 성균관대학교에 개설됨

- 새금융사회연구소와 성균관대학교가 2012년부터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과정’ 을 운영하는 내용으로 2012년 10월 9일에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
- 성대 법대·경영대 교수와 새금융사회연구소의 자금세탁방지 전문가가 강사로 나서 자금세탁방지 업무교육 실시
-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 종사자와 수사·세무당국 직원 등이 교육대상

□ ( 제도 )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과정’ 을 이수하는 경우, 교육이수에 대한 수료증을 발급함

- 해당 교육과정과 자격/인증제도의 복합적 활용을 통한 시너지 창출 가능
  - 자격/인증제도 응시자격을 부여받기 위한 사전교육과정으로 활용하는 방안 고려

□ 대학, 민간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교육이 형식적인 교육을 탈피하고 내실있는 교육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교육 후 교육효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함. 인증제도가 이에 대한 객관적 지표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됨

□ 국내 인증제도 도입시 주요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인증제도 운영주체 선정
  - 대표적으로 정부기관 또는 민간협회 주도방식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인증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적절한 민간주체가 없음
  - 이에 초기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기관의 지원이 필요함
  - 정부기관 주도 시, 자격증에 대한 공신력 및 신뢰도가 강화됨

- 둘째, 운영체계 수립
  - ① 응시자격요건

- ② 응시과목구성
  - 응시단계 구성(1단계, 2단계, 3단계 등)
- ③ 응시방법
  - On/Off-line, 응시문항수 구성, 응시소요시간, 응시비용체계 등
- ④ 자격유지방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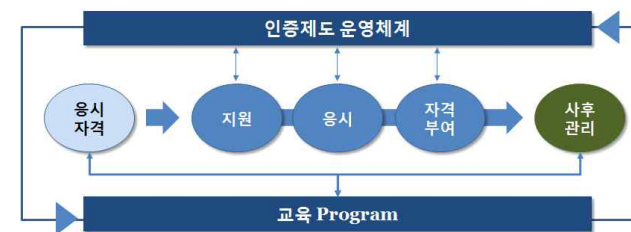
- 셋째, 인증관리체계 수립
  - 인증제도를 통한 자격요건 부여 후, 자격유지를 위한 사후관리체계 필요
  - **세부 추진과제 4-2:** AML 인증관리체계 수립

□ 응시자격요건을 포함한 자격인증제도는 국내 금융회사의 업종별 특성과 금융제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 <그림 3-11>에 제시된 교육 인증제도 운영흐름은 교육 Program을 바탕으로 응시자격, 지원, 응시, 자격부여, 사후관리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 이어짐

- 실질적인 인증제도 운영체계와 교육 Program은 순환적인 관계를 가지며,
- 응시자격 부여 및 자격유지 등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체계로 교육 Program이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음

< 3-11> AML 교육 인증제도 운영흐름도(案)



□ (운영 ) 자금세탁방지제도 자격인증제도는 일단 정부에서 운영을 하되, 향후 운영의 전문성이 요구될 때는 협회 등의 민간단체에 인가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세부 추진과제 4-2) 인증제도 관리체계 수립

□ AML 인증이 일회성 시험에 그치지 않고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자격유지조건(Continuing Education) 등과 같은 사후 인증관리체계가 필요함

○ < 3-11>의 ‘사후관리’ 영역

- AML 인증관리체계는 크게 <표 3-8>에 나타난 것처럼 자격보유관리와 자격유지관리로 구분할 수 있음
  - 자격보유관리: 인증시험의 지원 - 응시 - 자격부여 등 일련의 Process 단계별 이력관리
  - 자격유지관리: 인증시험을 통과한 인증자격보유자의 자격갱신관리

< 3-8> AML 인증관리체계

	관리내용
자격보유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 - 응시 - 자격부여 이력관리</li> <li>· 자격증빙 서류발급 지원 등</li> </ul>
자격유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격유지 대상관리</li> <li>- 자격유지를 위한 교육 Program 추천</li> <li>· 자격유지 여부관리</li> <li>- 관련 교육 Program 이수여부 관리</li> </ul>

- 인증관리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수립하여 관리규정 등에 명시하고, 관련 요구수준 및 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함
- 또한, 인증관리체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세부 추진과제 4-3) 관련 법/제도 개정방안 수립**

-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의 지원의 필요함
  - 특정금융거래보고법<sup>10)</sup>에 관련 조항을 추가하여 일정 자격을 갖춘 자만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문화(明文化) 필요
    - ( 1) 금융회사의 보고책임자 및 보고담당자는 금융위원회가 규정한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인증시험을 통과하여 관련 자격을 득한 자에 한함. 또한, 금융회사는 고객과의 대면을 통해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인증자격을 득할 것을 권고할 의무가 있음
    - (案 2)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者)는 금융위원회가 규정한 자격인증시험을 통과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자격인증이 유지되어야만 함. 또한, 금융회사는 고객과의 대면을 통해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하

는 직원에게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인증자격을 득할 것을 권고할 의무가 있음

- 자격제도 시행(案) 마련
  - 자격제도 시행규칙 및 기준안 마련
  - 출제기준안 마련
  - 출제 및 검토 위원 추천

금융회사에 인증자격을 보유한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장려함

- 순환보직제도의 예외 업무로 ‘자금세탁방지 보고 및 업무책임자’ 등을 지정하고, 일정 업무경험 및 자격인증을 득한 경우 해당 업무에 대한 지원우선권 부여
- Teller 등 채용 시 자격인증을 보유한 경우 가산점 부여 등

교육과 연계한 자격/인증제도 시행 시, 교육이 자격/인증제도 획득을 위한 목적으로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체계가 필요함. 또한 지나친 자격경쟁이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민간단체가 해당 자격인증제도의 운영을 주도할 경우, 민간단체의 공신력을 강화하고 지나친 영리성을 배제하기 위한 제도적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함

**3.2.2 실행방안**

**가. 실행주체 정의**

「자격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자격은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국가자격’ 과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민간자격’ 으로 구분됨

- 민간자격은 민간자격등록제도 및 민간자격국가공인제도로 구분
- 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이 관리하는 민간자격을 공인할 수 있음<sup>10)</sup>

해외 자금세탁 관련 자격증인 CAMS, ICA Certificate, FIBA AML Certification 등은 민간협회 주관의 민간자격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AML자격/인증제도의 실행주체는 자격증의 형태에 따라 국가자격인 경우 정부, 민간자격인 경우 민간단체로 구분할 수 있고, 실행주체별 자격에 대한 장단점은 <표 3-9>와 같음

10) 「제19조

< 3-9>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의 비교

구분	국가자격	민간자격
주관	신설하여 관리·운영 (필요에 따라 위탁 가능)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운영 (관련 협회 등)
근거법령	자격기본법	자격기본법
장점	· 시험의 공정성, 방법 등에 대하여 수험자 등의 형평성에 따른 문제발생이 거의 없음 · 정부주도로 인한 공신력 확보 · <b>유관기관의 협조를 얻기 용이하며 빠르고 안정적인 정착 가능</b> · 관련부처에서 제도실제, 행정운영, 자격시험 내용 등에 대한 통제 가능	· 직무별, 업종별 세분화, 다양화 가능 · 시험 주관사간 경쟁으로 제도 개선 가능
단점	· 인력 및 비용조달의 어려움 · 시장의 변화가 AML 자격/인증제도에 탄력적으로 반영되기 어려움(비경쟁)	· 초기 도입 시 시험을 주관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단체 선정의 어려움 · AML자격/인증제도에 대한 객관성 결여 · 정부의 통제가 어려움

국가자격 및 민간자격 각각 장단점이 있지만, 국내에는 자금세탁방지제도 자격증을 관리하는 **부재**하므로 AML 자격/인증제도의 도입은 정부가 주관하여 ‘국가자격’의 형태로 도입되어야 함

- 제도 도입 초기에는 빠르고 안정적인 제도의 정착이 우선되므로 정부가 주관하여 AML 자격/인증제도를 도입·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 AML 자격/인증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자금세탁방지협회(가칭)의 설립·운영되면 국가자격관리를 위탁 또는 이관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위탁과 이관의 차이 및 장단점은 <표 3-10>과 같음

- 자격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자격 관리자는 국가자격을 관리·운영 등에 관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위탁할 수 있음<sup>11)</sup>
- 민간으로 관리 주체가 변경되어도 안정적으로 제도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입법이 전제되어야 함

<표 3-10> 자격관리 주체에 따른 장단점

	위탁( )	이관(案)
--	-------	-------

11) 「제16조

사무주체	정부기관	관련단체 (자금세탁방지제도협회 등)
관리·운영주체	위탁기관 (자금세탁방지제도협회 등)	관련단체 (자금세탁방지제도협회 등)
자격형태	국가자격	민간자격
장점	· 국가자격증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운영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음 · 자격제도의 연속성 확보가능	· 정부기관의 인력/비용 절감효과 · 자격제도의 발전 및 개선의 자율성 보장
단점	· 정부기관의 노력이 계속적으로 필요(인력/비용)	· 자격제도의 연속성 결여 · 민간자격은 국가자격보다 공신력과 권위가 낮은 편임 · 이미 취득한 국가자격에 대하여 동등한 자격의 민간자격을 부여하는 등의 후속절차 필요

□ AML 자격/인증제도를 전문협회로 위탁 또는 이관할 경우 전문성 확보, 능력개발 및 네트워크 강화가 가능함

□ 전문협회의 위탁 또는 이관으로 회원들의 지식·윤리 교육 및 회원 간의 교류가 전문 협회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 실행내용

□ AML 자격/인증제도의 도입은 실행기관, 자격제도 형태에 따라 <그림 3-12>와 같이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국제적인 추세를 고려하되 국내 금융권의 실정 및 특성을 반영한 방안 모색 필요

< 3-12> AML 자격/인증제도 도입방안



( 1 ) 정부에서 인증한 자금세탁방지제도 전문 교육과정을 일정기간 동안 수료하면 교육 기관에서 수료증 또는 인증서를 교부하는 방식을 일컬음

○ 관련 교육기관과의 유기적 연대를 통해 단계적으로 도입 가능

□ (案 2)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지식, 기술의 습득정도로 판단하고 직무수행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하는 방법임

- 자격증 취득자는 실전형 전문인력이라는 인식을 부여함은 물론 종사인력의 목표의식과 자부심 부여로 자금세탁방지 분야의 발전 도모
- 자격증을 일단 취득한 이후에도 주기적인 보수교육을 요구하는 자격유효기간제도를 도입하여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에 대한 주관기관의 사후관리 필요

□ <그림 3-12>에 언급된 것처럼, (案 2)의 경우 법정자격제도와 자율자격제도에 대한 선택이 필요함

- 법정자격제도의 형태로 시행하는 경우, 특정법률에 관련 내용을 명문화하고 더 나아가서 자금세탁방지업무를 법정자격시험을 통과한 자에 한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음
- 자율자격제도는 민간교육기관 및 자율단체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실무자 또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응시하는 것을 말함
- 각 제도의 특성은 <표 3-11>과 같음

< 3-11> 자격제도 비교

	법정자격제도	자율자격제도
주관	, 민간 가능	정부, 민간 가능
업무	규제실무 담당	제한없음
강제성	높음(초기 정착 유리)	낮음(초기 정착 불리)
전문성	낮음	높음
특성	일반적 이론	직무별, 업종별 세분화 가능

□ ( ) 강제성을 부여하여 자금세탁방지 AML 자격/인증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금세탁방지제도 담당자의 전문성을 단기간에 제고하기 위해서는 각 금융기관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실무를 법정자격제도 합격자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법정자격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경과규정 적용) 각 실무담당자가 자격증을 취득하는 동안 자금세탁방지제도 업무의 중단 없는 실행을 위해서는 일정기간동안 시험횟수를 늘리는 등의 경과규정의 적용이 필요

○ (案 1)과 같은 전문교육기관의 교육이수자 또는 실무에서 일정기간 근무자에 한하여 일부 시험과목을 면제하여 주는 등 기존 교육제도 및 실무담당자들의 경력을 고려한 유동성 있는 도입 필요

□ (법률 제정비)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자격증(인증제도)의 법적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자격증 체계)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수행자는 텔러(Teller)에서부터 실무담당자(Compliance Officer) 까지 다양하며 각 업무에 따른 지식요구수준이 다름. 이를 고려하여 자격증을 업무별로 세분화하고 필요에 따라 순차적으로 상위등급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미국, 영국 등의 선진국의 경우 전문성의 정도에 따라 자격증별 취득레벨이 다양함
  - CAMS(미국): 한가지 종류의 단일화된 자격증
  - FIBA Certification(미국): FIBA AMLCA, FIBA CPAML 등 수준에 따라 2단계로 구분
  - ICA Certificate(영국): Certificate, Advanced Certificate, Diploma 등 3단계로 구분

○ 높은 수준의 지식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보고책임자 및 담당자는 가장 상위단계의 자격증 취득자로 배치할 것을 규정화하는 것도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필요한 방안임

□ (이관 시 주의사항) AML 자격/인증제도는 국가자격의 형태로 도입되나 이후 관련 전문기관으로 위탁(委託)이 아닌 이관(移管)의 형식으로 변경된다면 민간자격의 절차를 취할 필요가 있음

- (국가자격 신설 절차) 국가자격 신설은 위해서는 「자격기본법」 제3장 및 「자격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도입하여야 함
  - 동법에 의하면, 자격 취득수요가 적어 민간자격의 운영이 곤란하거나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령으로 국가자격 신설을 허용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자격을 신설·변경·폐지하고자 할 때는 심의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야 함
  - 또한, 국가자격의 관리 및 운영 등에 대한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이 가능함
  - 「자격기본법」 제3장의 관련 법령 및 시행령은 다음과 같음

**「자격기본법」 제3장**

**제11조(국가자격의 신설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하여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국가자격을 신설할 수 있다.

1.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
2. 국방·치안
3. 자격 취득수요가 적어 민간자격의 운영이 곤란한 분야

4. 밖에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인된 민간자격(이하 “공인자격”이라 한다)과 동일한 명칭의 국가자격을 신설하지 못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자격을 신설·변경 또는 폐지(이하 “신설등”이라 한다)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부처간에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④ 심의회는 국가자격을 신설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자격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자격을 신설등을 권고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라 국가자격을 신설등을 권고하는 경우 심의회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16조(국가자격 관리·운영의 위임·위탁)** 국가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을 관리·운영 등에 관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 제22조(국가자격 신설 등의 심의요청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국가자격을 신설·변경 또는 폐지(이하 “신설 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려면 심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국가자격 신설등의 목적과 필요성
  2. 국가자격 신설·변경 시 자격검정기준
  3. 국가자격 신설·변경 시 자격제도 운영계획
  4. 국가자격 폐지 시 향후 대책(폐지되는 자격의 자격취득자에 대한 대책 등)
  5. 그 밖에 심의회가 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자료
- ② 국가자격을 신설등에 있어 관계 부처 간에 의견이 달라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자료 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자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관계 부처의 의견
  2.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의견

- **(민간자격 신설 절차)** 신설은 「자격기본법」 제4장 및 「자격기본법 시행령」에 기반함
  - 민간자격은 타 법령에서 금지하거나, 국민의 생명·건강·안전·국방 등에 직결되는 분야가 아니거나, 심의회에서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하지 않는다면 신설 및 운영이 가능함
  - 민간자격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등록을 하여야 함
  - 또한, 민간자격의 신뢰 및 사회적 통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의를 거쳐 공인(公認)이 가능함
  - 「자격기본법」의 민간자격 관련 주요 법령 및 시행령은 다음과 같음

**「자격기본법」 제4장**

-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① 국가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2.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3.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4.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④ 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민간자격의 공인)** ① 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의회 심의를 거쳐 법인이 관리하는 민간자격을 공인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자격은 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을 수 없다.
1. 해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이 운영하는 자격
  2.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관리·운영하는 자격
  3.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인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격
- ③ 민간자격의 공인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격기본법 시행령」**

- 제23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①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민간자격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등록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 등록관리기관은 등록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민간자격의 신설이 금지되는 분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 ③ 등록관리기관은 신청된 민간자격이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 민간자격을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한다.
- ④ 등록관리기관은 등록대장을 관리·보관하여야 하며, 민간자격의 등록현황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⑤ 등록신청서, 등록대장의 기재사항 및 관리방법, 등록증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24조(민간자격의 공인기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민간자격에 대한 국가의 공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에 따른 자격제도 운영의 기본방향에 적합한 민간자격의 관리·운영능력을 갖춘 것
  2.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시행된 것으로서 3회 이상의 자격검정실적이 있을 것
  3. 관련 국가자격을 있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자격의 검정기준·검정과정 및 응시자격 등 검정



관련 국가자격과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수준일 것

**25조(민간자격의 공인 절차)**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의 공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공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및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4, 2010.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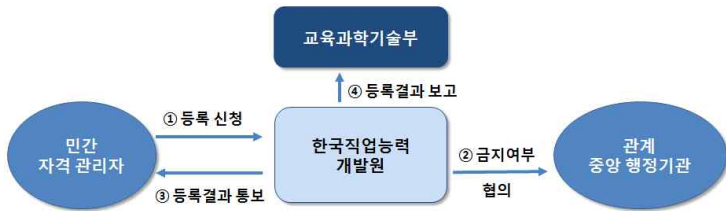
1.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2. 공인신청일 이전 1년간의 민간자격 검정실적 및 수지결산서 등 사업관련 실적
3. 공인신청 이후 3년간의 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수지에산서
4. 검정시설·장비 등을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5. 삭제 <2010.9.3>
6. 신청기관의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7. 해당 민간자격의 활용정도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9.3>

③ 그 밖에 민간자격의 공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9.3>

- ( **등록** ) 자격증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sup>12)</sup>에 민간자격관리자로 등록되어야 함. 절차는 <그림 3-13>과 같음

< 3-13> 민간자격 등록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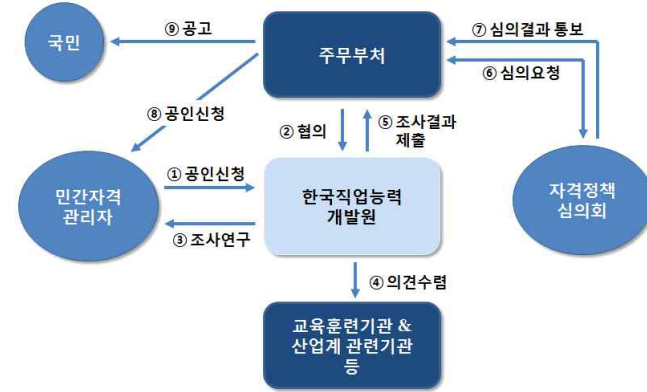


- (민간자격 국가공인) 다음과 요건을 갖춘 민간자격증에 한하여 <그림 3-14>의 절차에 따라 국가공인을 득할 수 있음

- 1년 이상 그리고 3회 이상 검정실적(자격발급실적)

- 법인이 관리/운영
- 민간자격 등록관리 기관에 등록

<그림 3-14> 민간자격 국가공인 절차



- (기타 고려사항) 자금세탁방지제도 AML 자격/인증제도의 성공적인 도입과 정착을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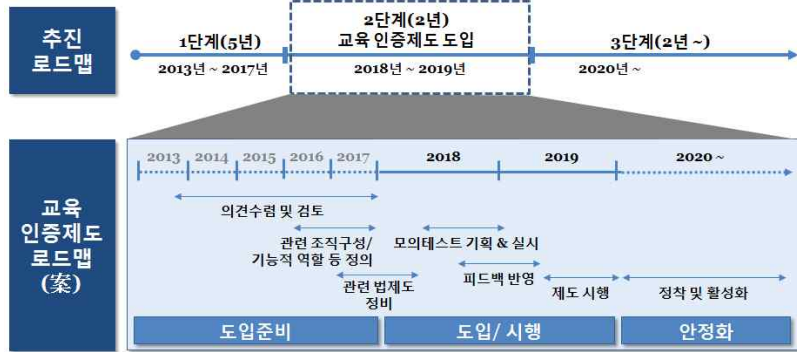
-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 자금세탁방지제도 교육인증과 관련하여 업계, 학계의 공청회 등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시험과목을 선정하고 과목선정에 대해서는 학계검증 필요
  - 시험방법은 객관식/주관식 등 전문성의 수준을 고려하여, 일반자격은 객관식 위주로, 전문자격의 경우 객관식/주관식(서술식 포함) 혼용형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응시자격에 대한 세부기준
  - 업무경험, 수료한 교육과정 및 선취득 자격증 등을 고려한 응시 자격 세부규정 마련 필요

**. 실행 로드맵**

- 국내 자금세탁방지 교육인증자격제도 도입에 대한 실행 로드맵은 <그림 3-15>와 같음

<그림 3-15> 교육인증제도 추진 로드맵(案)

12) 의거한 민간자격제도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자격관리운영센터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설치



(            단계) 단기교육과제 실행을 위한 전문강사 Pool, 콘텐츠 Pool 확보 및 공유체계 수립과 더불어 2단계 인증제도도입의 본격적인 도입을 위한 준비단계임

- 자금세탁방지제도 전문가, 업권별 협회, 금융기관 실무자, 학계, 정부 등 유관기관이 모여 공청회 등의 형식으로 AML 자격/인증제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실행 방향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 필요
- AML 자격/인증제도 시험과목, 방법, 시험주기 등 기본체제정립
- AML 자격/인증제도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입법절차 준비
- 국가자격증 신설을 위한 심의회 등 필요절차 진행
- 이미 AML 자격/인증제도 및 자격제도를 도입한 선진국의 사례 및 유사 국내 자격제도를 벤치마크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
- AML 자격/인증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홍보

□ (시행 단계) AML 자격/인증제도의 본격적인 시행단계로 이 단계에서는 인증제도에 대한 피드백을 듣고 반영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보완이 필요함

- 법적강제성을 부여함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과규정 도입

□ (안정화 단계) 교육추진 2단계 동안 제도를 보완하여 AML 자격/인증제도를 안정화 시키는 단계임

- 자금세탁방지제도협회 설립에 따른 정부주관에서 민간주관으로의 이양 준비
- 자금세탁방지제도 규정 및 시장의 변화를 시험에 적절히 반영하기 위한 시험과목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필요
- 전문성 유지를 위하여 이미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 보수교육 실시

## . 실행 성공요소

- (입법) 자금세탁방지제도 실무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AML 자격/인증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을 법과 규정에 명문화 하여 강제성을 부여하여야 함
- (정부주도) 각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위해서는 도입 초기 정부의 주도가 무엇보다 중요함
- (공신력) 자격증의 내용 및 자격증 자체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하여 AML 자격/인증제도의 필요성 및 도입에 대한 업계의 동의를 얻어야 함
- (AML 자격/인증제도에 대한 검증) AML 자격/인증제도가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전문성 강화 방안이 되기 위해서는 시험과목 및 방법에 대한 업계, 학계의 검토와 검증이 요구되며 실무에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보수교육) 보수교육실시 주체 및 기간, 방법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AML 자격/인증제도가 단발적인 이벤트가 아닌 전문성유지의 실질적인 수단이 되도록 하여야 함

### 3.2.3 (참고) 교육기관 인증제도 도입

- (추진과제 4)의 실행이 안정화되어 AML 전문가 및 교육전문가들이 다수 존재하게 될 경우, 민간차원에서의 교육이 활성화 될 것이고 이에 따라 다수의 AML 교육기관이 설립될 것임
  - 이 경우, 무분별한 AML 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을 통제·관리하고 AML 교육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AML 교육기관에 대한 인증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교육기관 인증제도 정의) AML 교육기관 인증제도는 전문성 있고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이 평가인증지표를 기준으로 교육과정을 점검 및 개선한 후 이를 평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일컫음
  - (역할) AML 교육 및 자격/인증제도가 민간분야로 이양 및 확대됨과 동시에 증가하게 될 관련 교육기관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제도적 장치임
- (도입 목적) 교육기관 인증제도 도입의 주요 목적은 교육내용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유지에 있으며 인증제도를 통하여 교육내용의 표준화 및 통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임
  - AML 교육 및 자격/인증제도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기관들이 무분별한 증가를 방지하고,

- 교육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교육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극대화함
- 교육기관 인증제도 도입에 따른 장단점은 <표 3-12>와 같음

< 3-12> 교육기관 인증제도 장단점

장점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내용의 질적 향상 및 수준 유지</li> <li>• 교육내용의 표준화 가능</li> <li>• 교육과정 및 내용에 대하여 통제가능</li> <li>• 교육기관에 대한 수강생의 신뢰도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증 및 관리를 위한 인력 및 비용부담</li> <li>• 교육의 획일화 및 전문성 저하 가능</li> </ul>

□ (국내사례) 국내 여러 분야에서 민간기관에 대하여 정부의 평가 및 인증제도를 도입한 사례가 다수 존재함

- 국내 교육인증제도 도입의 주요 특징
  - 교육기관의 평가 및 인증에 대해서는 법적근거를 두고 정부기관에서 직접 운영
  - 관련부처에 인증을 받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선택 가능
- 교육기관에 대한 정부의 인증제도를 도입한 예는 <표 3-13>과 같음

<표 3-13> 국가 교육인증기관 예

	학점은행 원격교육 훈련기관	보육기관
인증내용	/사회/이학/공학/예·체능 및 보건의료 등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및 보육인력의 전문성 등
인증기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강제성	없음	없음
관련법령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 (법적근거)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관계법령에 법적근거 마련 및 프로세스 정립이 필요함
  -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관련 조항을 추가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관련 법률의 시행령에 대한 예로는 「학점은행 원격교육 훈련기관 평가 및 인증에 관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들 수 있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학습과정의 평가인정)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 )의 교육·훈련시설 등(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

정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을 받으려는 교육훈련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평가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은 제4항의 평가인정 기준에 따른 평가인정사항을 변경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의 기준이 되는 교수 또는 강사의 자격, 학습시설·학습설비, 학습과정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평가인정서의 발급)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한 경우에는 평가인정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평가인정서"라 한다)를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서의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실행주체) AML 교육기관 인증제도 도입 시, 실행주체는 교육기관, 금융정보분석원 및 관련부처 등이며 실행주체별 주요 역할은 <표 3-14>와 같이 정의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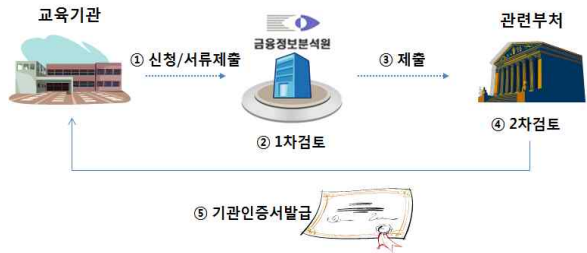
<표 3-14> 실행주체별 역할

AML 교육기관	금융정보분석원	관련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사진/커리큘럼/교육시설 등 교육인프라 구축</li> <li>• 교육기관인증 신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준교육과정 정의</li> <li>• 교육기관 인증기준 제시</li> <li>• 교육기관 인증 심의위원회 구성</li> <li>• 교육기관 인증신청 시 1차 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적근거 마련</li> <li>• 교육기관 인증 공고</li> <li>• 교육기관 인증서 발급</li> </ul>

□ (관련 업무 프로세스) 각 실행주체별 역할을 바탕으로 한 AML 교육기관 인증제도 업무 프로세스(案)는 <그림 3-16>과 같음<sup>13)</sup>

13) 등에 관한 법률」참고

< 3-16> AML 교육기관 인증제도 프로세스(案)



- 프로세스의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에 정의함으로써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각 단계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신청/서류제출: 학습과정/ 운영계획, 강사현황, 학습시설 및 학습설비 등 법령에서 정하는 서류와 신청서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제출
  - ② 1차검토: 법령으로 정의한 인증제도 기준에 적합한지 조사·확인
  - ③ 제출: 금융정보분석원은 1차검토 결과를 관련부처에 제출
  - ④ 2차검토: 금융정보분석원의 1차 조사·확인결과를 검토하여 인증여부 결정 후 신청 교육기관에 결과 통지
  - ⑤ 기관인증서발급: 법령에 따른 기관인증서 발급

### 3.3 3 추진과제

- 3 **주요 목표**는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전문협회를 설립하는 것임.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교육 및 제도이행에 대한 금융회사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협회 설립을 통해 정부주도의 제도 이행에서 민간주도의 제도 이행을 달성할 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가치를 창출하는 질적인 측면의 성장을 달성하는 것이 핵심 추진전략임
- (추진과제 5)에서는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전문협회의 필요성, 역할, 도입절차 등을 수립하고, 관련 법과 제도의 개정방안에 대해서 논의함
- (추진과제 5)의 세부 추진과제는 아래와 같이 (세부 추진과제 5-1)과 (세부 추진과제 5-2)로 구분함
  - 세부 추진과제 5-1: AML 전문협회 설립
  - 세부 추진과제 5-2: 관련 법/제도 개정방안 수립

#### 3.3.1 ( 5) 자금세탁방지 전문협회 설립 개요

-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이행이 안정기에 접어들고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깊어짐에 따라, 통일된 창구를 만들어 원활한 소통을 통해 업계의 발전을 도모하고, KoFIU와는 별개로 자금세탁방지제도 관련 업무를 전담할 민간협회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국내에는 이미 은행연합회, 한국금융투자협회 및 현재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전자금융협회 등 업계의 소통창구로서 민간협회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민간정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자금세탁방지제도와 관련해서도 정부기관과 효율적인 소통을 위한 협회 등이 필요
-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도 다수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민간협회가 존재함. 자금세탁방지 민간협회의 주요 역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정부 및 규제기관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회원사의 요구사항 전달 및 조율
  - 자금세탁방지제도 관련 전문자격증 발급 및 관리
    - CAMS, ICA Certificate 등
  - 관련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제공
  - 자격증을 취득한 회원들의 전문성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Continuing Education) 등의 사후관리
  - 자금세탁방지제도 전문가들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의견교류의 으로 활용
    - On-Line 포럼, 실시간 세미나, 국제 컨퍼런스 등 개최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자금세탁방지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와 같은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민간협회 설립이 필요함. 필요성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 첫째, 민간 차원에서 자금세탁방지 전문가의 효율적인 관리·감독
  - 다양한 분야 및 유형의 자금세탁방지 전문가들을 업무영역에 있어서 서로 동질적으로 묶어줄 수 있는 구심점 및 관리감독을 하는 협회설립을 통해 공익성 확보
- 둘째,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 및 위상 제고
  - 자금세탁방지 전문가의 자격요건 및 역량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전문성 강화
- 셋째, 자금세탁방지제도 발전에 기여
  - 현행 제도시행에 있어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협회차원의 수렴된 의견을 정부기관에 건의함으로써 제도발전을 도모하고, 정부정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
  - FATF Recommendation 등 국제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응

**. 민간협회 관련 해외사례**

- 우리나라가 설립을 필요로 하는 민간협회에 대한 해외사례는 다음과 같음
  - 해외의 경우, 앞서 언급한 (추진과제 4)의 교육인증제도에 대한 운영을 민간협회에서 주관하는 다수의 사례가 있음
    - ACAMS, ICA, IMLPO 등
- 미국, 영국 등의 선진국은 2000년대 초반에 자금세탁방지제도 도입과 함께 다양한 민간협회가 설립 및 운영되어 왔음
- 해당 협회들은 정부와 회원 간의 의견을 전달하는 중간창구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설, 자격증제도 도입, 세미나 개최 등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 ACAMS(Association of Certified Anti-Money Laundering Specialists)**

- 자금세탁방지과 금융범죄 전문가들의 지식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국제 멤버십 조직으로 2001년 미국에 설립된 민간단체

< 3-17> ACAMS 홈페이지([www.acams.org](http://www.acams.org))



- 2011년 현재 160여 개국, 13,500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자금세탁방지 분야 최대 조직
- 전세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 의하여 지도되고 있으며 가장 최신의 AML/CTF 정보 보유

- 자금세탁방지제도 전문 자격증인 'CAMS'의 발급 및 관리
- 자격증 취득 및 회원들의 실무지원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격증을 취득한 회원들의 전문성 유지를 위하여 보수교육 등을 통하여 끊임없이 관리
- 민간분야와 공공기관의 자금세탁방지제도 관련 제도, 규정, 전략 및 실무교육 담당
- 자금세탁방지제도 전문가들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on-line 포럼, 실시간 세미나, 국제 컨퍼런스 등 동종업계 전문가들의 의견교류의 장으로 활용

**) ICA(International Compliance Association)**

- 2001년 자금세탁방지제도 뿐만 아니라 Compliance와 부정, 금융범죄 예방 Compliance & Risk 에 업무와 관련하여 영국에서 설립된 국제협회
- 금융뿐만 아니라 통신, 게임, 미디어, 회계 등 다양한 분야의 Compliance 영역을 대표하는 협회

<그림 3-18> ICA 홈페이지([www.int-comp.org](http://www.int-comp.org))



- 교육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교육 및 훈련에 재투자함
- 50여 개국 10,000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영국뿐만 아니라 두바이와 싱가포르에 지사를 두고 있음
- 협회의 교육 및 훈련은 ICT(International Compliance Training)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ICT의 교육프로그램 및 자격증에 대해서는 맨체스터대학교, 영국금융서비스숙련협회(FSP: Financial Skills Partnership) - Level4, 영국 은행인연합회(BBA: British Bankers Association) 외 다수의 영국 및 국제기관에서 인증을 받음
- 자금세탁방지 뿐만 아니라 컴플라이언스, 금융범죄 분야의 자격증을 발급하며 각 분야별로 Certificate, Advanced, Diploma 3단계임
- 회원자격은 <표 3-15>에 제시된 것처럼, 자격증 취득수준에 따라 4가지로 구분되고, Professional 등급 이상은 'MICA-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pliance' 를, Fellow 등급 이상은 'FICA-Fellow of the International Compliance Association' 호칭을 사용할 수 있음

< 3-15> ICA 회원자격 구분

	자격요건
Associate	ICA Diploma
Professional	ICA Diploma 합격 또는 실무 10년 이상
Fellow	ICA Professional 자격으로 5년 경과 후
Corporate	1명 이상의 직원이 ICA Professional 멤버인 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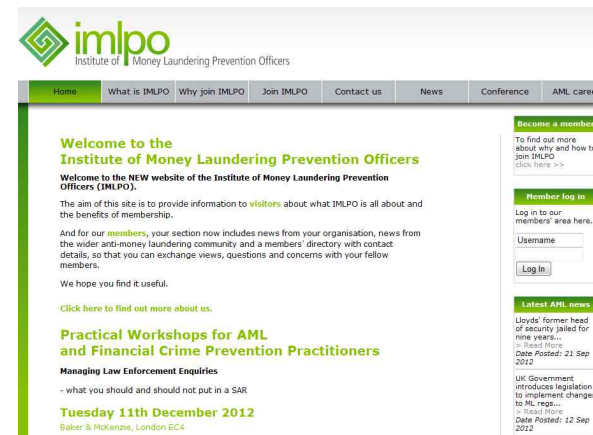
- ICA는 영국은행협회(BBA: British Bankers Association), 영국금융서비스숙련협회(FSP: Financial Skills Partnership), 영국자금세탁방지협회(IMLPO: Institute of Money

Laundrying Prevention Officers) 등과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음

) IMLPO(Institute of Money Laundering Prevention Officers)

- 2001년 설립된 영국 자금세탁방지협회
- 초기 IMLPO는 금융 분야 자금세탁방지 담당자들로 구성되었으나 현재는 자금세탁방지 제도가 적용되는 전 산업분야로 확대됨

< 3-19> IMLPO 홈페이지(www.imlpo.com)



- 자금세탁방지관련 특별이슈에 대한 포럼, 협회 멤버들에 대한 교육 및 전문가적 개발 촉진, 자금세탁방지 이슈에 대하여 회원사를 대표로 목소리를 내는 역할 수행
- 정부 및 규제기관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회원사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조율
- 협회에서 발급하는 고유 자격증 및 교육프로그램은 없지만, ICA와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음. 단, 멤버사의 요청에 따라 멤버사 및 멤버사의 직원을 위한 고유의 업종과 특성을 반영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 (세부 추진과제 5-1) 자금세탁방지 전문협회 설립

- 현재, 금융정보분석원은 제한된 인원으로 6,000여개에 달하는 금융회사를 직접 교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금융회사의 자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궁극적으로는 내실있고 실질적인 자금세탁방지제도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주도의 협회 등을 통한 자율적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간중심 즉, 자금세탁방지 전문협회 중심의 교육체계로 전환하였을 때 교육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의 역할은 다음의 사항에 집중함

- 첫째, 금융회사 일반 임직원교육을 지양하고 준법감시부직원, 검사요원, 수탁기관 자금세탁방지 **위주의 교육을 실시함.** 교육내용도 정부정책방향 등 중요사항을 전달하면서 쌍방향 소통을 강화함
- 둘째, 교육접점은 교육횟수나 이수여부 보다는 창구직원을 대상으로 질문지 배포 등을 통해 실질적인 점검이 되도록 하고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보유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함. 또한 금융회사의 자체교육에 자금세탁방지 분야 교육을 포함시킬 예정임
- 셋째, 금융정보분석원이 관리 중인 교육통계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임. 교육통계시스템은 그 동안 통계관리만을 해왔으나 앞으로는 교육방법(집합 및 연수, 문서교육, 사이버교육 등)별 인정횟수에 차등을 두는 등 교육이수 및 횟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교육통계가 보다 정확하고 실효성있게 관리되도록 함

□ 민간 자금세탁방지 전문협회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금융회사의 임직원을 위한 교육 담당
  - 교육자원(1단계 전략 추진과제) 관리 및 운영
- 둘째, 자금세탁방지 인증제도 운영 및 관리
- 셋째,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에 대한 컨설팅
  - 검사, 감독결과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금융회사별 자금세탁방지제도 개선 지원
- 넷째, 자금세탁방지 업무담당자 및 관련 전문가들의 커뮤니티 운영
- 다섯째, 자금세탁방지제도 1차 이행 평가 업무 위탁 등

□ 금융정보분석원의 교육 관련 역할을 대행하게 될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전문협회를 설립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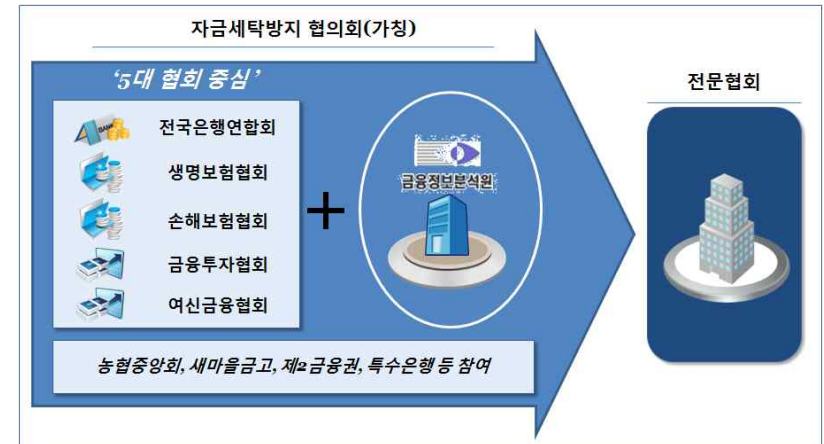
- ( 1 ) 기존 유사기관 활용
  -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목적의 기관인 새금융사회연구소와 자금세탁방지제도의 학술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연구단체인 청정금융포럼 중 적절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관에 해당 업무를 이관하는 방법
  - 신규 협회설립에 따른 절차적·물리적 노력을 축소할 수 있으나, 기존 역할에서 신규 역할을 추가할 경우 전문성 등에 대한 보장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 2 ) 신규 민간협회 설립

- 현재 금융정보분석원이 담당하고 있는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금융회사 업무담당자를 포함한 전 임직원의 교육, 자금세탁방지 인증제도 운영 및 관리, 제도이행에 대한 컨설팅 등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협회를 설립하는 방법
- 기존 유사기관을 활용하는 것보다 설립에 대한 비용 및 노력이 많이 소요되나, 기존 기관이 보유하던 이미지에 영향을 받지않고 새로운 역할 및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협의회 구성) 우리나라의 경우, <그림 3-20>과 같이 다수 금융회사의 이해관계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준비단계로 ‘**자금세탁방지 협의회**’를 우선 구성 및 시행하는 것이 부작용 및 거부감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임

○ (※) 본 보고서에서는 ( 2 )에 대해서만 언급함

< 3-20> 자금세탁방지 협의회를 통한 협회설립 개념도



□ (자금세탁방지 협의회 역할) 다수의 금융회사들이 자금세탁방지 전문협회 설립의 필요성 및 역할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반발로 인한 실행의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음. 이에 완충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금세탁방지 협의회를 구성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함

- 첫째, 해당 금융협회 소속 금융회사의 대표자 역할 수행

- 5 : 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 자금세탁방지 전문협회 등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견수렴 및 요구사항 전달

- 둘째, 전문협회 설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설립 준비
- 셋째, 전문협회에 대한 각 금융협회 및 소속 금융회사의 역할 정립

□ ( **구성** ) 자금세탁방지 협의회는 금융정보분석원의 지원 하에 5대 협회 중심으로 구성함. 이사회를 중심으로 사무국을 두고 작업반을 구성함

- 이사회: 금융정보분석원 및 5대협회의 대표로 구성
- 사무국: 5대협회 중 선발
- 작업반: 금융정보분석원 및 5대협회의 실무자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제2금융권, 특수은행 등의 참여 유도

□ ( **전문협회 설립주체** ) 전문협회는 자금세탁방지 협의회에 권한과 책임을 이양(讓)받아 독립적인 기관으로 활동을 영위함

□ ( **전문협회 수익원** ) 관련 권한과 책임이 전문협회에 이양된 경우, 협회 운영에 대한 주 수익원으로 다음을 고려할 수 있음

- 첫째, 교육사업에 대한 수익
- 둘째, 제도이행에 대한 컨설팅사업에 대한 수익금
- 셋째, 인증제도 시행에 따른 응시료 등의 수익금
- 넷째, 협회운영에 대한 기부금
- 다섯째, 회원가입비 등

. (세부 추진과제 5-2) 관련 법/제도 개정방안 수립

□ 원활한 협회설립을 위해서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야 함

-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관련 조항 추가
  - (案) 자금세탁방지 전문가는 금융위원회장의 허가를 받아 자금세탁방지협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협회는 법인의 형태로 설립해야한다.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에 사업범위 등 추가
  - (案) 자금세탁방지협회가 수행해야할 사업분야는 다음과 같다.
    - ① 금융회사 종사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제도 교육사업
      - 금융위원회장이 위탁하는 교육

- 온·오프라인 교육
- 자금세탁방지제도 교육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배포 등
- ②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육성 및 관리
  - 자금세탁방지 전문가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 ③ 자금세탁방지 전문가자격제도 운영
- ④ 국내외 자금세탁방지제도 및 동향 연구
- ⑤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시행에 관한 컨설팅사업 등

○ 또한, 법률 및 시행령에는 설립절차 상의 법적근거도 명시되어야 함

- (案) 자금세탁방지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① 사무소의 소재지, ②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와 정관을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 아울러, 협회설립과 관련해서는 민법상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협회설립절차에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규정은 민법상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라 할 수 있음

○ 협회설립을 인가받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서류 중에 하나가 바로 정관(定款)이기 때문에 정관 기재사항에 대해서도 법정화(法定化) 하는 것이 필요함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상의 ‘인증제도 도입 및 협회설립’에 관한 법조문 추가 예시는 다음과 같음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3조(금융정보분석원)**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을 둔다.

- 제4조·제4조의2 및 제6조에 따라 보고받거나 통보받은 사항의 정리·분석 및 제공
- 제4조·제4조의2·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감독 및 검사
- 제4조제6항제2호에 따른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협조 및 정보 교환
-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

**5.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제도 확립을 위한 자적중 업무**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금융정보분석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그 소속 공무원은 이 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 외에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금융정보분석원의 정원·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업무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제도 발전을 위하여 자금세탁방지협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협회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이하 “금융정보분석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건수
2. 제7조에 따라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수사기관 등에 제공한 건수
3. 제8조에 따라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 정보를 교환한 건수
4.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 업무와 관련된 통계자료

**5조(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금융회사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은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를 원활하게 하고 금융회사등을 통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1.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 업무를 담당할 자의 임명 및 내부 보고 체제의 수립
2.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해당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 및 업무지침의 작성·운영
3.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한 임직원의 교육 및 연수

**1) 4.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 업무를 담당할 자와 보고 업무에 관여한 금융회사등의 종사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규정한 일정자격 요건 준수**

**案 2) 4.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 업무를 담당할 자와 보고 업무에 관여한 금융회사등의 종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 요건 준수**

### 3.3.2 실행방안

#### · 전문협회 설립절차

일반적으로 전문협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여야 함

-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설립절차상의 법적근거 마련 필요
  -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설립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법인의 형태로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설립하도록 규정함

**(법인형태)** 자금세탁방지협회의 법인형태는 사단법인/재단법인 여부와 영리성 구분에 따라 <표 3-16>과 같이 3가지 형태가 가능함

< 3-16> 법인형태 구분

영리성 \	사단법인	재단법인
영리법인	사단법인	불가능
비영리법인	비영리 사단법인	비영리 재단법인

- 민법상 법인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구분됨
  - **사단법인:** 사람의 단체로 사단이 있는 것으로서 법적 구성이 되어 있는 법인. 사원을 필수적인 구성요소로 하며 사원총회에 의하여 자주적인 사단법인의 최고의사를 결정, 그 결정에 따라 법인이 관리·운영
  - **재단법인:** 일정한 목적에 따라 관리·운영되는 특별재산으로서 재단이 있는 것으로서 법정구성이 되어있는 법인. 사원이나 사원총회가 없고, 재단법인설립행위에 나타나 있는 설립자의 의사에 근거하여 특정재산이 관리·운영
- 한국금융투자협회 등 유사협회는 사단법인의 형태로 설립되어 운영됨. 사단법인을 우선적으로 고려
- 영리성 여부에 따라 영리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구분
  - 영리 사단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함. 구성원의 이익을 꾀하며 법인의 기업이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여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주로 상법에서 규율됨
  - 비영리 사단법인: 학술, 종교, 자선, 기예 등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동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범위 내에서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도 비영리성을 잃지 않음. 주로 민법에서 규율됨
- 유사 협회의 설립규정은 대부분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의 형태로 설립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제6편 제1장 제283조 ④** 협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자금세탁방지협회의 법인형태는 ‘**비영리 사단법인**’ 이 적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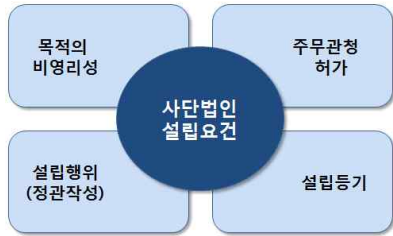
- 교육·훈련 및 자격증 관리, 회원사 관리, 회원 간의 교류 등을 주목적으로 법률에 근

설립되는 법인 성격의 단체로 사업목적에 영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회비, 자격증 시험 접수비, 교육프로그램 사용료 등의 수입활동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수적인 영리행위로 이러한 행위가 자금세탁방지협회의 비영리성을 해친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 ( ) 비영리 사단법인의 일반적인 설립은 <그림 3-21>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함

< 3-21>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요건



- **목적의 비영리성:** 자금세탁방지협회는 영리 아닌 사업(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해야 함
  - 개개의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종국적으로 수익이 구성원들에게 배분되는 것을 의미
  - 반드시 공익일 필요는 없음
  -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그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는 비영리성을 잃지 않음
  - 비영리성의 판단은 정관에 기재된 바에 의하기 때문에 정관 작성 시 사업목적의 비영리성에 대하여 명확히 해야 함
- **설립행위(정관작성):** 사단법인의 설립 시 2인 이상의 설립자(발기인)가 법인의 근본규칙을 정하여 이를 서면(정관)으로 기재하고 기명날인을 해야 함
  - 사단법인의 성질상 설립자(발기인)는 반드시 복수임
  - 근거법령에 정관기재사항에 대하여 명문화 필요
- **주무관청 허가:** 자금세탁방지협회가 설립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함
  - 국내법은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음
  - 자금세탁방지협회의 설립허가 여부는 주무관청의 자유재량임
  - 주무관청이란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관청이며 일반적으로 설립 근거법령상 규정됨
- **설립등기:** 법인과 거래하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인의 조직·내용을 일반에게 공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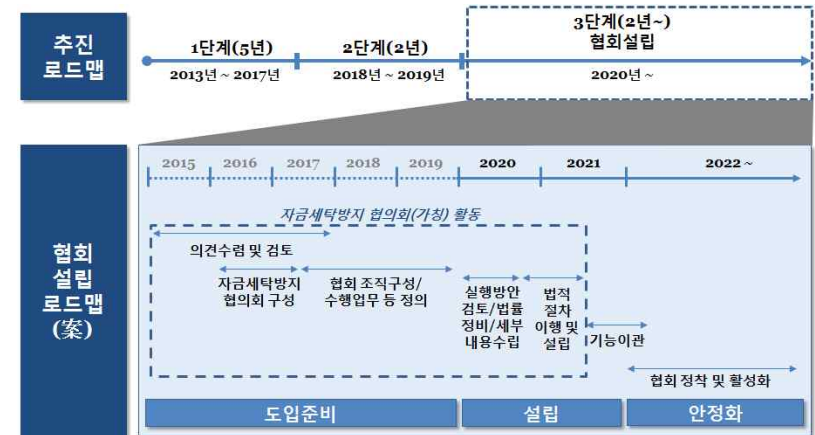
- 주무관청의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날로부터 일정기간 내 설립등기 실시

- 협회설립을 위해서는 법적인 설립절차도 중요하지만 관련 기관 및 관련인과 설립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

### . 실행 로드맵

□ 자금세탁방지협회 설립에 대한 실행 로드맵은 <그림 3-22>와 같음

<그림 3-22> 자금세탁방지협회 설립 추진 로드맵(案)



- **(도입준비 단계)** 자금세탁방지제도 교육 추진과제 실행과 더불어 협회가 본격적으로 설립 되는 3단계를 위한 준비단계로 주요 수행업무는 다음과 같음
  - 자금세탁방지제도 전문가, 향후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될 대상, 학계, 정부 등 관련기관의 자금세탁방지협회에 대한 필요성 공감 및 의견 공유
  - **자금세탁방지 협의회** 구성
    - 자금세탁방지협회 조직 구성, 업무범위, 주요기능 등 제반사항 구체화
    - 설립 이전까지 정부기관 즉,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수행했던 업무 중 신설 협회로의 이관업무 정의
- **(설립 단계)** 자금세탁방지협회 설립을 위한 기본요건을 충족하여 법적·실질적 실체를 설립하는 단계로 주요 수행업무는 다음과 같음
  - 본격적인 설립단계에 필요한 법·제도를 검토하고 필요 법·규정에 대한 개정절차 수행

- : 목적의 비영리성, 설립행위(정관 작성), 주무관청의 허가, 설립등기
- o 설립장소, 필요인력, 관련 시스템 등 업무수행을 위한 Infra 구축

□ ( **단계**) 자금세탁방지협회가 설립목적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며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단계임

- o 협회 설립 이전까지 정부기관 즉,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수행했던 협회 관련 업무를 이관하여 본격 수행
  - 인증제도, 회원사 관리,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등의 업무
  - 안정적인 업무진행을 위하여 충분한 준비와 협의 하에 순차적으로 이관하는 것이 필요
- o 협회의 고유 역할 확립을 위한 협회의 업무 및 역할범위 확장
  - 제도이행에 대한 정부기관과의 정책 조율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민간 중심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 주체가 됨

**. 실행 성공요소**

- (입법) 자금세탁방지협회가 자금세탁방지업무를 대표하는 법인으로서 권위를 갖고 원활히 사업목적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률로써 협회설립의 근거 및 정당성을 부여하여야 함
  - o 협회 설립 및 활동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 (사업목적 정의) 자금세탁방지협회가 설립 목적에 부합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설립 이전 단계부터 고유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업무에 대하여 구체화된 사업목적 정의 필요
- (회원의 참여) 자금세탁방지협회는 ‘사단법인’의 형태로 설립될 예정으로 사단(사람의 단체)은 협회의 존재에 있어서 필수적 요소임. 때문에, 회원사의 자발적인 참여와 활동 보장되지 않으면 협회는 형식적으로 존재하게 됨
  - o 협회 설립에 대한 회원간의 공감대 형성 및 동기부여가 이루어져야 함
  - o 협회 설립 이후에도 회원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협회 역할에 대한 회원들의 피드백을 적극 수용하는 분위기 창출 필요
- (금융정보분석원과 업무 협조) 자금세탁방지협회의 업무가 효과적·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유관 정부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과의 업무교류 및 협조가 필수적임

[1] 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방지 2008년도 연차보고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2009  
 [2] 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방지 2009년도 연차보고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2010  
 [3] 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방지 2010년도 연차보고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2011  
 [4] 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방지 2011년도 연차보고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2012  
 [5] 금융정보분석원, 『호주 AUSTRAC의 AML제도 조사보고서 요약』,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2011

[6] 새금융사회연구소, www.nfsi.or.kr  
 [7] ABA, 미국은행협회, www.aba.com  
 [8] ACAMS, 미국 AML 전문가협회, www.acams.org  
 [9] AUSTRAC, 호주 FIU, www.austrac.gov.au

[10] AUSTRAC, 『AML/CFT Compliance Officers in Australia - AUSTRAC Survey Series No. 1』, AUSTRAC, 2010.03

[11] AUSTRAC, 『Annual Report 2010-2011』, AUSTRAC, 2011  
 [12] AUSTRAC, 『Annual Report 2011-2012』, AUSTRAC, 2012

[13] BBA, 영국은행협회, www.bba.org.uk  
 [14] CUNA, 미국신용협동조합협회, www.cuna.org  
 [15] FIBA, 미국 플로리다 국제은행원협회, www.fiba.net  
 [16] FinCEN, 미국 FIU, www.fincen.gov  
 [17] ICA, 영국 AML 자격증협회, www.int-comp.com  
 [18] IMLPO, 영국 AML 사설협회, www.imlpo.com  
 [19] KYC360°, 영국 자금세탁방지 커뮤니티, www.kyc360.com

[20] Mohammad Abdallah A Fattah AlRashdan, 『An evaluation of the AUSTRAC enforcement mechanism in regards to non-compliance with reporting obligations』, The University of Wollongong Thesis Collection, 2012

[21] NFA, 미국선물협회, www.nfa.futures.org

## [ 1] 소규모 금융회사를 위한 교육컨텐츠 개발방안

### 1.

#### 1.1 금융회사를 위한 교육컨텐츠 개발 필요성

- ( )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이 대형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우체국, 신한, 새마을금고 등의 소규모 금융회사가 자금세탁의 사각지대가 됨
  - 소규모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위험 증대
    - 위험관리를 위해 제도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시급한 실정임
  - 최근 저축은행 등의 불법대출 관련 비리 발생으로 내부통제 및 감시 강화 필요
- (자기교육 관리역량) 대형 금융기관의 경우, 교육 및 훈련을 관리할 수 있는 유용한 내부 자원을 보유하거나, 예산투입을 통해 외부교육 전문업체로부터 교육 및 트레이닝을 자체적으로 실시함
- 반면, 소규모 금융회사의 경우,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시스템 및 내부교육과 훈련자원이 없고, 외부교육프로그램을 통한 교육과 훈련 투자에 소극적임
  - 경영진의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중요성 인식 부족
    - 영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업무로 인식
- (Infra 부족) 따라서,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교육계획 및 운영기반을 마련해야 하나, 교육 관련 전담인력, 전문 컨텐츠, 운영능력, 시스템 등의 Infra가 부족하여 자체 교육을 시행 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교육과 훈련의 중요성 인식을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
    - 현재 소규모 금융회사의 경우,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에 의한 내부보고체계 및 교육연수에 대한 의무 미부과
- (특화되고 표준화된 교육 필요) 중앙회 또는 협회 차원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표준화 정도가 미흡하기 때문에, 소규모 금융회사에 특화되고 표준화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유관기관의 지원이 필요함
  - 소규모 검사수탁기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역량 부족
- 해외 선진국의 경우 조직규모, 교육대상의 특성,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정부기관 주도로 운영 중에 있음
  - 호주 AUSTRAC

- 조직규모 및 복잡성 등을 고려한 컨텐츠 차별화를 시행하였고, 현재 약 80개 사이버 교육프로그램(Session) 운영 중에 있음
- 2010년 3월 발표한 AUSTRAC Survey 결과에 의하면,
  - e-Learning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87.3%**가 자금세탁방지제도와 관련한 e-Learning 교육이 준법감시인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함
- 뿐만 아니라, 유형집(Typologies Report), 업무지침(Guidance Notes), 감독지침(AUSTRAC Regulatory Guide) 등 **교재형식의 자료제공**에 대한 만족도도 90%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 (교육교재) 교육컨텐츠의 이해도를 높이고, 교육 후 자가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컨텐츠와 연계한 교육교재 개발이 필요함
  - 소규모 토론회식 심화학습을 위한 보조교재 개발
- (모바일 교육) 또한, 교육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채널의 확대가 필요함
  - 향후, 모바일로의 Conversion이 가능한 컨텐츠 개발
- 2011년 자금세탁방지 검사 총 742건의 지적사항 중 교육부분이 약 24.7%인 183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소규모 금융회사의 경우, 교육컨텐츠 및 교재 개발에 대한 지원을 통해 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STR/ CTR 품질향상 필요) 또한, 소규모 금융회사의 경우 직접 텔러가 직접 STR/ CTR을 작성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므로 STR/ CTR 작성법 교육을 통해 보고서의 품질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Teaching 방식**을 도입하여, STR/ CTR을 직접 작성 및 코칭하는 교육컨텐츠 및 교재 개발
    - STR/ CTR 작성 품질향상을 통해 자금세탁 행위에 대한 감독기관의 대응력 강화

#### 1.2 교육컨텐츠 개발 목표

- 소규모 금융회사에 특화된 교육컨텐츠 개발을 통해, 경영진, 자금세탁방지 전담직원 및 관련 업무수행직원(텔러 등)의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이행역량을 강화함
  -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이행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제도 미이행시 제재조치 등을 통한 경각심 고취
- 사례 중심의 유연하고 실용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업무에의 활용도 및 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
  - 소규모 금융회사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사례 제시

- Teaching STR/ CTR 작성법 교육 실시
  - STR/ CTR 작성업무 이해도 및 활용도 증진
  - 소규모 금융회사의 보고품질 향상
-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을 통해 소규모 금융회사 직원의 역할 및 역량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컨텐츠를 제공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높임
  - 일반과정과 전문가 과정을 구분하여 개발
    - 교육내용 중 업무와의 연관성이 높은 부분을 취사선택하여 수강
- 검사와 연계한 실무위주의 교육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검사 필수사항 준수의 편의성을 도모함
  - 검사감독의 전략적 방향 및 지적사항에 대한 이해

## 2. 개발방안

### 2.1 구성( )

#### 2.1.1 구성 목적

-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개론에서부터 실무까지 포괄한 컨텐츠를 이해하기 쉽고, 직접 업무에 활용 가능하도록 개발하는 것이 주요 목적임
  - Easy to Use: 업무 활용성 극대
    - 사례 및 Q&A 중심의 실용적 컨텐츠 구성
    - Teaching 기법 등을 활용하여 실무적용성 극대화
  - Easy to Understand: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한 전달방식 활용 및 역할과 역량에 따라 차별화
    - 스토리텔링 등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기법 적극 활용
  - Easy to Read: 간단명료할 뿐만 아니라 일관성있는 자료 및 교육교재 구성
- ( 대상) 소규모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전담직원 및 관련 업무수행직원(텔러 등)이 교육의 대상임
- 소규모 금융회사의 경우, 자금세탁방지 전담직원과 관련 업무수행직원(지점 텔러 등)의 역할 구분없이 관련 업무수행직원이 직접 자금세탁방지 관련 보고를 수행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므로 실무를 포함한 공통교육이 필요함
- 따라서,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기본사항, STR/ CTR 작성법, 금융거래 참고유형 등을 종합한 교육컨텐츠를 제작함
- 또한, 자금세탁방지 전담직원 및 전문지식이 풍부한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교육컨텐츠를 별도로 구성함
- 전문가교육의 경우, 업무 상 필요성 등의 이유로 필요한 교육을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컨텐츠를 3단계로 구분하여 차별화함
  - 일반과정(1단계), 실무과정(2단계), 심화과정(3단계)

#### 2.1.2 컨텐츠 구성방안

- 교육컨텐츠는 구성 목적에 따라, 2개 과정의 4개 Session으로 구분됨(표 1)
  - 2개 과정: 공통교육 과정, 전문가교육 과정
  - 전문가교육 과정은 전문가의 관심영역에 따라 3개 Session으로 구분

〈 1〉 목적별 컨텐츠 구성

과정	Session	시간(분)	주요 내용
공통교육 과정	자금세탁방지제도 총론	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해</li> <li>• 자금세탁방지제도 내부통제체계</li> <li>• 고객확인 의무</li> <li>• 위험기반 거래모니터링 및 보고</li> <li>• 보고서 작성(STR/ CTR)</li> <li>• 기록보존 및 법적제재</li> </ul>
전문가교육 과정	2013 자금세탁 주요검사 내용 및 검사방법	1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금세탁방지제도 개요</li> <li>• 자금세탁방지 주요 제도</li> <li>• 2013년 자금세탁 검사방향</li> <li>• 자금세탁방지업무 검사 및 사례</li> </ul>
	의심거래보고서(STR) 작성 실무	1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금융거래 보고제도 개요</li> <li>• STR 작성 기본</li> <li>• 전제범죄 이해</li> <li>• STR 작성 사례연구(업권별)</li> </ul>
	자금세탁동향 및 사례연구	1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금세탁동향 소개</li> <li>• 일반 형사 분야 동향(횡령, 배임, 도박, 사기 등)</li> <li>• 국세, 관세 등의 자금세탁 주요 전제범죄 및 사례</li> </ul>

전문가교육 과정의 경우, 전체 컨텐츠를 별도 개발하기 보다는 개발된 교육프로그램을 차용하여 활용하되, 교육교재만을 추가개발하는 것이 효율적임

- 공통교육 과정의 경우, 소규모 금융기관의 특색에 맞게 개발 및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 2)
  - 교육은 총 6차시, 120분의 운영시간(Running Time)으로 구성
  - 차시당 운영시간은 10분 ~ 30분 내외

〈표 2〉 공통교육 과정의 차수별 교육내용

시간(분)	진행방식	주제	내용
1	15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이해</li> <li>• 자금세탁방지제도의 필요성 및 법적구제</li> <li>• 자금세탁방지제도 체계 및 운영성과</li> </ul>
2	15	스토리텔링 자금세탁방지제도 내부통제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통제체계 개요</li> <li>• 내부통제체계 구축</li> </ul>
3	30	스토리텔링 고객확인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객확인 의무 이해</li> <li>• 고객위험평가 이해</li> <li>• 고위험 고객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li> <li>• 고객확인 의무 주의사항</li> </ul>
4	30	스토리텔링 위험기반 거래모니터링 및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험기반 거래 모니터링 체계 개요</li> <li>• 의심거래보고제도 개요</li> <li>• 의심스러운 거래의 사례유형화 및 분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개요</li> </ul>
5	20	Teaching	보고서 작성 (STR/ CT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R 작성법</li> <li>• CTR 작성법</li> </ul>
6	10	스토리텔링	기록보존 및 법적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록보존, 면책규정, 형벌규정</li> </ul>
총시간	120			

공통교육 과정의 교육진행방식

- 교육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빠른 전개, 적절한 비주얼효과, 쉬운 설명 등의 요소가 조화를 이루어야 함
- 전체적인 교육진행은 강사 강의식 보다는 플래쉬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한 진행방식이 적절함
  - 강사 강의식: 플래쉬 애니메이션 보다 운영시간이 길고, 강사의 역량에 따라 몰입도가 결정되는 위험 존재
  - 플래쉬 애니메이션 방식: 강사 강의식 보다 운영시간이 적어 빠른 전개 및 적절한 비주얼 효과 사용으로 인한 몰입유도가 용이
- 진행방식은 강사 강의식, 플래쉬 애니메이션 방식, 스토리텔링기법, 직접 판서법 등을 선택적으로 혼합할 수 있음
  - 자금세탁방지제도 교육에는 강사 직접강의와 직접판서 혼합형과 플래쉬 애니메이션과 스토리텔링 혼합형 고려(표 3)

〈표 3〉 추천 교육진행방식 비교

전달방식	장점	단점	시사점
강사 직접강의와 직접판서 혼합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화감 및 현실감이 있음</li> <li>• 전문적인 내용전달이 용이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서 시, 판서내용의 정확한 인식에 어려움이 있음</li> <li>• 판서내용 로딩시간이 다소 길어 강의에의 몰입을 방해함</li> <li>• 애니메이션 기법 등 보다 긴 교육시간을 필요로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교육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 적합함</li> </ul>
플래쉬 애니메이션과 스토리텔링 혼합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뉴스, 드라마 등의 스토리텔링기법을 적용함으로써, 재미와 몰입을 유도함</li> <li>• 적은 시간에 내용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제 강사가 강의하는 것에 비해 현실감이 다소 저하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교육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에 적합함</li> </ul>

- 총 교육운영시간이 120분이므로 플래쉬 애니메이션과 스토리텔링 혼합형을 우선 고려함
  - 스토리텔링기법 활용으로 교육에 대한 몰입 유도
  - 밀줄 등 친화력이 높은 판서식의 장점 수용 가능

- (Teaching 적용) 5차시 STR/ CTR 보고서 작성교육의 경우는 단방향 지식전달 방식 보다는 ‘직접 작성’ 과 ‘지도’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임

## 2.3 개발

- 교육컨텐츠에 대한 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교육 후 자가학습 활성화를 위한 교육교재 개발이 필요함
- 교육교재는 컨텐츠 내용을 기반으로 한 주교재와 각 과정별 주요 주제(Topic)을 기반으로 토론식 심화학습이 가능한 부교재로 구성함
  - 컨텐츠 내용과 교육교재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는 컨텐츠와 교재가 동일주제에 의해 개발되는 것이 바람직함

## 2.4 사후관리

-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이해정도를 테스트하는 것이 필요함
  - ( 1) 소규모 금융회사 자체 평가체계 수립
    - 정기적으로 KoFIU에 평가결과 전달 및 공유
  - (案 2) KoFIU 금융포털 또는 협회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중앙집중식 평가
    - 교육대상 및 교육결과에 대한 공유 필요
- 또한, 지속적인 교육품질향상을 위해서 교육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3. 개발 실행방안

### 3.1 공통교육 과정 개발일정( )

- 상기 언급된 공통교육 과정의 컨텐츠 개발을 위해서는 총 2개월(8주)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표 4)

< 4> 개발 추진일정표

영역		구분	W1	W2	W3	W4	W5	W6	W7	W8
컨텐츠 개발	원고	교육내용 원고 작성								
	개발	기획 및 개발 프로젝트 관리								
	검토	수정보완								
교재 개발		교육교재 기획 및 개발								

### 3.2 소요예산(案)

#### 3.2.1 구성항목

- 컨텐츠 개발비용은 크게 세가지 항목을 포함함
  - 교육컨텐츠 개발비용
  - 매뉴얼(교육교재) 제작비용
  - 既 교육컨텐츠 차용비용

#### 3.2.2 예산

- 소규모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제도 교육을 위한 교육컨텐츠 제작예산은 총 80,000,000 원임(표 5)

<표 5> 소요예산 집계

( : 원)

	Session	컨텐츠 개발		교재개발 비용	합계
		차용비용	개발비용		
공통교육	총론		14,000,000	7,500,000	21,500,000
전문가교육	2013 자금세탁 주요검사 내용 및 검사방법	12,000,000		7,500,000	19,500,000
	의심거래보고서(STR) 작성 실무	12,000,000		7,500,000	19,500,000
	자금세탁동향 및 사례연구	12,000,000		7,500,000	19,500,000

	36,000,000	14,000,000	30,000,000	80,000,000
--	------------	------------	------------	------------

### 3.3 유지보수

- ( **유지**) 교육컨텐츠는 내용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야함
  - 법, 제도 변경사항 즉시 반영
  - 지속적인 사례 업데이트 및 추가
  - 교육의 전달력 향상을 위한 최신기술 적용
- (조사결과 반영) 교육 만족도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반응율이 높은 컨텐츠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 위와 같은 내용에 견주었을 때, 4개 Session에 대한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매년 2,000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함

## [ 2] 소규모 금융회사 교육컨텐츠 개발을 위한 설문조사

### 1. 개요

-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금융회사 등에 대한 제재 및 고객확인제도 강화에 따라 해당 업무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규모 금융회사의 보다 현실적인 교육지원을 수행하고자 관련 설문조사를 시행함
  - 대상: 소규모 금융회사(농협,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 설문수행기간: 2012.10.16 ~ 2012.10.19
  - 주요 설문내용
    -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이해 및 교육 경험
    - 선호하는 교육방식 및 업무적용시 중요요인 등
  - 설문 응답자수: 총 90명
    - 농협(20명), 새마을금고(22명), 상호저축은행(48명)

### 2. 응답자현황

- (금융기관 근무년수) 응답자의 금융기관 근무년수는 5년 이상인 경우가 약 84.4%로 대부분을 차지함. 따라서, 응답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이해수준은 높다고 할 수 있음
  - 1년 미만(약 5.6%), 1-3년(약 2.2%), 3-5년(약 7.8%), 5년 이상(약 84.4%)
- (직급분포) 응답자의 직급은 사원부터 부장이상 임원까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됨
  - 사원(약 20.0%), 대리(약 30.0%), 과장(약 22.2%), 차장(약 14.4%), 부장 이상 임원(약 13.3%)
- (담당업무) 응답자의 담당업무 현황은 수신업무가 약 33.3%로 가장 많았고, 준법지원 및 감사업무자도 다수 존재함
  - 수신(약 33.3%), 여신(약 5.4%), 준법지원 관련(약 17.2%), 기타(약 44.1%)
  - 기타 응답으로는 감사(17명), 경영관리(1명), 실무책임자(2명), 업무총괄(2명), 총무/내부통제 등(7명), 자금운용(4명), STR 보고/ 자금세탁(2명), 영업지원(1명) 등이 있었음
- (AML과 업무와의 연관성) 응답자의 약 82.2%가 본인의 업무와 자금세탁방지와의 연관성이 있다고 응답함(그렇다, 조금 그렇다 포함)
  - 그렇다(약 73.3%), 조금 그렇다(약 8.9%), 보통이다(약 10.0%), 조금 그렇지않다(약 4.4%), 그렇지 않다(약 3.3%)



(AML 업무적용 정도)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이해 및 적용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약 67.8%가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적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에 응답함(그렇다, 조금 그렇다 포함)

- 농협: 약 45.0%만이 긍정적인 답변을 한 반면, 새마을금고(약 68.2%), 상호저축은행(약 77.1%)은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답변을 함
- 제도이행에 대한 업무적용으로 생각하여 대부분 긍정적인 답변을 했을 수도 있다고 판단됨

< 1> 기관별 AML에 대한 업무적용 정도에 대한 응답현황(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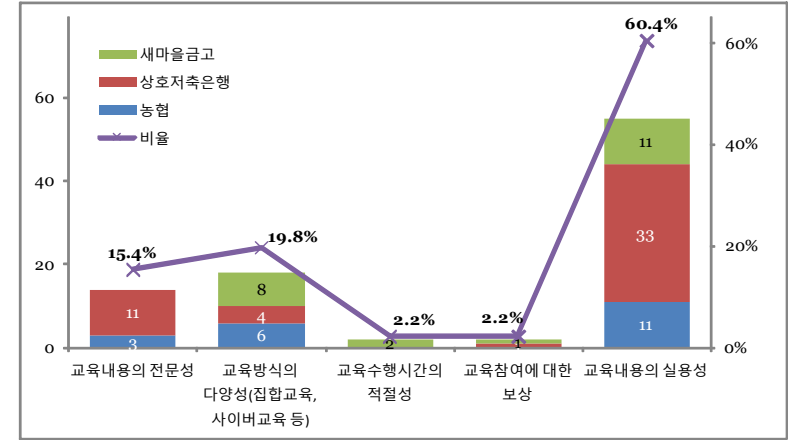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합계
농협	5	4	8	3		20
새마을금고	5	10	5	1	1	22
상호저축은행	25	12	8	2	1	48
합계	35 (약 38.9%)	26 (약 28.9%)	21 (약 23.3%)	6 (약 6.7%)	2 (약 2.2%)	90

- (AML 교육경험) 응답자의 약 76.7%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교육을 1회 이상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문서에 의한 교육, 사이버교육, 사내교육, 집합교육, 중앙회/ 연수원 등 기관교육 등

### 3. 교육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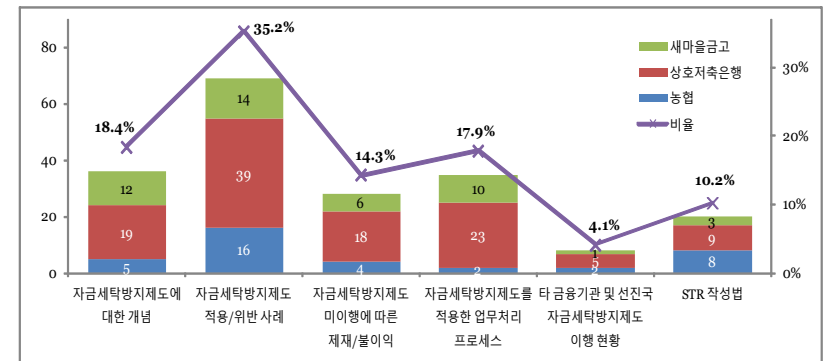
- (교육성공요인)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약 75.8%가 ‘교육내용의 전문성 또는 실용성’ 이라고 응답함
- 농협: 교육의 실용성(약 55.0%), 교육방식의 다양성(약 30.0%)
- 새마을금고: 교육의 실용성(약 50.0%), 교육방식의 다양성(약 36.4%) 順
- 상호저축은행: 교육의 실용성(약 67.3%), 교육내용의 전문성(약 22.4%) 順

< 1> 기관별 AML 교육의 효과성 향상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응답현황(단위: 명, %)



- (교육내용)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교육내용 중 업무적용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약 35.2%가 ‘자금세탁방지제도 적용 및 위반사례’ 라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개념(약 18.4%) 및 업무처리 프로세스(약 17.9%) 등으로 응답함(복수응답 허용)
- 모든 응답기관이 공통적으로 ‘자금세탁방지제도 적용 및 위반사례’ 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함
- 농협: 자금세탁방지제도 적용 및 위반사례(약 43.2%), STR 작성법(약 21.6%) 順
- 새마을금고: 자금세탁방지제도 적용 및 위반사례(약 30.4%),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개념(약 26.1%) 順
- 상호저축은행: 자금세탁방지제도 적용 및 위반사례(약 34.5%), AML 업무처리 프로세스(약 20.4%) 順

<그림 2> 기관별 필요한 교육내용에 대한 응답현황(단위: 명, %)



- 두 번째로 필요한 교육내용에 대한 응답은 기관별로 상이하게 나타남. 이는 기관별 업무특

반영한 **교육의 필요성**을 의미함

- **(교육채널)** 선호하는 교육채널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약 53.3%가 사이버교육을 선택하였고, 약 44.4%가 집합교육을 선호함
  - 교육채널에 대한 응답 또한 기관별 차이가 존재함.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사이버교육 보다 집합교육에 대한 선호가 높음
    - 농협: 사이버교육(약 70.0%), 집합교육(약 25.0%), 우편교육(약 5.0%)
    - 새마을금고: 사이버교육(약 54.5%), 집합교육(약 41.0%), 우편교육(약 4.5%) 順
    - 상호저축은행: 집합교육(약 54.2%), 사이버교육(약 45.8%) 順
  - **모바일교육을 선호한 응답자는 존재하지 않았음.** 이는 응답자들이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교육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상의 일부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교육시간)** 1회 교육시간에 대한 질문에는 약 42.2%가 2시간 이내라고 응답하였고, 약 30.0%는 1시간 이내라고 응답함. 나머지 27.8%는 2시간 초과 교육을 선호함
- **(교육횟수)** 적절한 교육횟수를 묻는 질문에는 약 46.7%가 반기별 1회라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분기별 1회, 매년 1회가 각각 25.6%씩 응답함
- **(기타 의견)** 기타의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전문가에 의한 교육 필요
  - 현업부서에 실용성 있는 교육교재에 기반한 교육 필요/ 업무매뉴얼 필요
  - **사례중심**의 실효성 있는 교육 필요
  - 변경사항 실시간 공유 및 주기적인 교육 필요
  - 협회차원의 **교육 및 교재 지원** 강화
  - STR 작성법에 대한 실무교육 필요(절실)
  - 딱딱한 개념교육 보다는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 필요
  - 사내교육 활용 목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의 교육내용을 **동영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
  - 주요 질의응답내용 공유 필요
  -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객응대요령 등에 대한 교육 필요

요한 것으로 나타남

- 교육내용 관점에서는 이론 위주의 교육 보다는 업무 적용과 관련한 ‘적용 및 위반 사례’와 ‘업무처리 프로세스’ 등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고
- 금융회사별 차별화된 특성을 반영한 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음
  - 사이버교육 및 집합교육 선호

#### 4.

- 농협,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 소규모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제도 교육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실용성 및 전문성 있는 교육이 필요한 실정이고,
  - 자체 교육역량의 부족으로 인해, 동영상 교육자료, 교육교재 및 업무매뉴얼 등의 지원이 필